

연구보고 R481 / 2004. 12.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박 대 식 연구위원



## 머 리 말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3.1%에서 2000년에는 7.2%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4.4%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에는 도시 2.1%, 농촌 4.2%이었는데, 2000년에는 도시 5.4%, 농촌 14.7%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인 노인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농촌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소비, 저축 및 부채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한 현지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신 응답자들과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농촌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② 현행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기존자료 조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외국 사례의 수집·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이다.

영농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일 참여 정도가 높았다.

대다수의 응답자들(78.8%)은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80.5%)은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에 불과했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으며,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농가일수록 노후 생활을 준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 평균 총 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이었다.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 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다.

총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25.5%이고, '1~250만원'은 16.0%, '251~500만원'은 17.5%, '501~1,000만원'은 14.0%, '1,001~2,000만원'은 13.5%, '2,001만원 이상'은 13.5%이고, 평균 총근로소득은 918만원이었다.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원' 14.5%이고, 평균은 1,184만원이었다.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의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은 815만원이었다.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비농업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이었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0%이며, 자산 총소득이 '1~50만원' 7.0%, '51~100만원' 5.5%, '101~500만원' 11.0%, '501만원 이상' 5.5%이며, 평균은 87만원이었다.

공적 이전소득은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이며, 평균은 86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19만원)에 불과했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로 받은 금액은 '20만원 이하' 82.5%, '21~50만원' 5.0%, '51~100

만원' 2.0%, '101~200만원' 2.5%, '201만원 이상' 8.0%이고, 평균 금액이 38만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이었다.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57.0%(114명)이고, 금액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0%이며, 평균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등이었다.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채(빚)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이었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였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밀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된 현지 실태조사 결과 및 국내·외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집단 및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형태(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연령계층, 지역(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성별, 영농참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농촌 노인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있고 영농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규모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 농기구, 농자재의 포장 단위 등을 농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 노인들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개발해야 한다.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ABSTRACT

---

## A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o investigate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related policies; and
- 3)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major research methods includ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field survey, and so on.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lderly residents of 8 villages, asking them about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income level (aged 65 or older).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by search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and means) and cross-classification tables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the field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56.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participating in farming. Most (78.8%) elderly farmers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continue to conduct farming. Only a small percentage (3.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participating in non-farm economic activities. About two thirds of the respondents had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10,000 won. Average annual household income of the respondents was 11,730,000 won. About one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spend less than 500,000 won in monthly living expenses. The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of the respondents were 710,000 w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cessary

- 1) to have a right perspective about the rural elderly;
- 2) to prep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assisting the economic activities and securing the incomes of the rural elderly;
- 3) to develop the differential approach based on the social group and class;
- 4) to develop the elderly friendly agricultural policies;
- 5) to provide farming education suitable for the rural elderly;
- 6) to arrange various non-farming works; and
- 7) to improve the welfare programs for the rural elderly.

Researcher: Dae-Shik Park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 범위 및 내용 ..... 8
4. 연구방법 ..... 9

### 제2장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동향과 전망

1. 농촌 인구의 노령화 동향 ..... 11
2.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전망 ..... 17

### 제3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1. 실태 조사의 개요 ..... 19
2. 마을 단위 조사 ..... 20
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26

### 제4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1. 영농 관련 실태 ..... 29
2. 농업 이외 경제활동 실태 ..... 41
3. 경제상태 ..... 44
4. 노후 생활 대책 ..... 50
5. 소결 ..... 53

## 제5장 농촌 노인의 소득 실태

1. 소득원 .....	56
2. 가구 총소득 .....	61
3. 근로소득 .....	64
4. 자산소득 .....	68
5. 공적 이전소득 .....	72
6. 사적 이전소득 .....	74
7.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 .....	76
8. 소결 .....	79

## 제6장 농촌 노인의 소비와 저축·부채 실태

1. 생활비 .....	84
2. 부담되는 소비 지출 .....	86
3. 용돈 .....	86
4. 저축 .....	87
5. 부채 .....	88
6. 자녀 등에 대한 지원 .....	90
7. 소결 .....	92

## 제7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 연금 .....	93
2. 공공 부조 .....	95

3. 경로우대제도 .....	96
4. 취업증진제도 .....	97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100

#### 제8장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

1. 일본 .....	103
2. 대만 .....	108
3. 독일 .....	110
4. 시사점 .....	112

#### 제9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114
2.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22

부록: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조사표 .....	125
참고 문헌 .....	147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지역별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	13
표 2- 2.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	14
표 2- 3.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	15
표 2- 4.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	16
표 2- 5. 농촌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	18
표 2- 6. 농가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	18

### 제3장

표 3- 1. 실태조사 대상 지역 .....	19
표 3- 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27

### 제4장

표 4-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 참여 정도 .....	30
표 4- 2. 농지 소유 규모 .....	31
표 4- 3. 경작면적 .....	32
표 4- 4. 영농 교육·훈련 .....	33
표 4- 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경험 .....	34
표 4- 6. 농사일 부담 정도 .....	35
표 4- 7. 농사일 이유 .....	36

표 4- 8.	농지 처리 방법 .....	37
표 4- 9.	지역별 영농 지속 의사 .....	39
표 4-10.	지역별 농사규모 계획 .....	40
표 4-11.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42
표 4-1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의사 .....	43
표 4-13.	가정경제 상태 인식 .....	45
표 4-1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 인식 .....	45
표 4-15.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 .....	46
표 4-16.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 .....	47
표 4-17.	경제 상황 만족도 .....	48
표 4-18.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 상황 만족도 .....	49
표 4-19.	노후 생활 준비 정도 .....	50
표 4-2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활 준비 정도 .....	51
표 4-21.	노후 생활비 마련의 책임 .....	52
표 4-2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활비 마련의 책임 .....	52

## 제5장

표 5- 1.	농촌 노인의 소득원 .....	57
표 5- 2.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 비율 .....	59
표 5- 3.	사회경제적 특성별 가구 총소득 .....	63
표 5- 4.	총근로소득의 분포 .....	64
표 5- 5.	농업조수입의 분포 .....	65
표 5- 6.	농업소득의 분포 .....	65
표 5- 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 .....	67

표 5- 8.	농업 이외 근로소득 .....	68
표 5- 9.	가구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 .....	68
표 5-10.	자산 총소득의 분포 .....	69
표 5-11.	금융소득의 분포 .....	70
표 5-12.	부동산소득의 분포 .....	70
표 5-13.	가구 총소득 대비 자산소득의 비중 .....	71
표 5-14.	공적 이전소득(총계)의 분포 .....	72
표 5-15.	공공 부조의 분포 .....	73
표 5-16.	가구 총소득 대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 .....	74
표 5-17.	사적 이전소득의 분포 .....	75
표 5-18.	가구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 .....	75
표 5-19.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	76
표 5-20.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	77
표 5-21.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	78
표 5-22.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이용 의사 .....	79

## 제6장

표 6- 1.	생활비 마련 방법 .....	85
표 6- 2.	월 평균 생활비 .....	85
표 6- 3.	부담되는 소비 지출 .....	86
표 6- 4.	월 평균 개인 용돈 .....	87
표 6- 5.	저축 유무 .....	88
표 6- 6.	월 평균 저축액 .....	88
표 6- 7.	부채 유무 .....	89
표 6- 8.	부채 금액(연간) .....	89
표 6- 9.	부채의 주요 원인 .....	90

표 6-10.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유무 .....	91
표 6-11. 자녀 등에 대한 지원 금액 .....	91

## 제7장

표 7- 1.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	94
표 7-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량 변동 .....	102

## 그 립 차 례

---

### 제2장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동향 .....	12
-------------------------------	----

### 제4장

그림 4-1. 영농 참여 정도 .....	30
그림 4-2. 영농 지속 의사 .....	38
그림 4-3. 농사 규모 계획 .....	40
그림 4-4.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의사 .....	42

### 제5장

그림 5-1. 소득원 구성 .....	58
그림 5-2. 가구 총소득 .....	62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70년에 3.1%이던 것이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4.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 노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촌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에는 도시 2.1%, 농촌 4.2%이던 것이, 2000년에는 도시 5.4%, 농촌 14.7%, 2003년에는 도시 6.2%, 농촌 16.6%로 나타났다.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도 도시가 1970년의 5.4에서 2000년의 25.3으로 증가한 데 반해서 농촌은 1970년의 9.3에서 2000년의 78.7로 급증하였다. 농가 경영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6.9%에서 2000년 32.7%(6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60년 17.2%에서

2000년 51.0%)로 증가하였다. 즉,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20년 이상 앞서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현상은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농,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영농후계 인력의 단절, 출산율의 저하 등에서 기인한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농촌 노인들은 저축이나 자녀로부터의 생활비 보조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박대식 등 1996 및 2000; 한정자 등 2002). 예를 들면, 60%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농촌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400원이며, 연금을 받는 경우는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자 등 2002).

농촌 노인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특히, 농사일)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박대식 등 1996 및 2000; 한정자 등 2002). 그러나 그 동안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학문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근 농림부는 농업구조개선과 연계하여 노령 농업인의 은퇴 및 복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인구 노령화의 장기적 전망이나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고령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농촌 노인을 소극적인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루어진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농업이나 농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도시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만들어졌으며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도 농촌은 우선순위가 항상 낮았다.

최근 정부는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에서도 농촌 노인 복지 증진 문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고령사회기본법(안)』에서도 농촌 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노인들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2002년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개정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도농 간 차이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 노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 농촌 노인 관련 선행 연구들은 농촌 노인을 주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만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 및 농촌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② 현행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노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소득 실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와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운근 등(1985)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 농가의 고령화 실태와 이에 따른 노후대책 및 농업구조개선 수단으로서의 농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고령농가의 경영 실태를 농가의 경영주 및 가구주 현황, 농지 보유 및 임대차 현황, 농기계 보유 및 이용 현황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농민연금제도를 검토하고 농가 조사를 통하여 농민연금제도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다.

정명채 등(1992)은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에서 노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이양 형태와 은퇴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4개 농촌지역과 2개 어촌지역에서 총 6개 부락을 선정하여 50세 이상의 경영주 147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였으나 노후 생계보장대책, 노인 의료보장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농어업인의 영농 및 영어 활동에 관하여 일부 다루고 있으나 농촌 노인의 경제생활 및 소득 실태 전반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

조완규(1994)는 “농촌 노인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 5개 군의 60세 이상 농촌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농촌 노인의 생활 실태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족구성 형태 및 자녀와의 관계, 영농 실태와 영농의향, 일상생활, 심리·정신적 상태, 건강 및 질병, 노후준비 방법 및 원하는 노인복지제도 등이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영농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외활동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고, 소득 실태는 2~3개 문항(소득 작목, 연간 소득 등)으로 아주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박대식 등(1996)은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에서 전국의 15개 농어촌지역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주 30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개선 및 개발 방향을 소득보장대책, 의료보장대책, 사회적 서비스대책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농어촌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노후 생활을 지향하고, ② 여러 가지 사회계층을 고려하며, ③ 개인, 집단 및 조직, 지자체, 국가(정부)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촌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윤순덕(1999)은 “농촌 노인의 부업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 노인들의 개인 및 공동부업에 대한 실태 및 의사를 파악하고자 ‘자신의 농사 이외에 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을 부업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중 공동부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지도사 100명과 부업경험이 있거나 현재 부업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된 개인부업의 종류는 총 37종으로 생산·제조업(식품가공, 민속공예품 제작 등), 경노동업, 농축관련업, 고용업(경비, 공장 취업 등), 상업, 관청 사업(가로 청소, 산림보호 등) 등이었고, 개인부업을 통한 월 평균소득은 약 2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공동부업으로는 농산물가공·제조업, 임·원예업, 생산·제조업, 농업 관련 경노동업 등이 많았다. 공동부업은 70% 이상이 4~10월에 이루어지며, 평균 2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부업활동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영농 활동을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모선희(2000)는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시스템 모형 연구”에서 농촌 노인들의 생활현황과 복지욕구를 알아보고자 서산시와 홍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249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내용은 농촌 노인의 경제, 건강·의료, 가정, 여가생활 등의 생활현황과 인근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복지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농촌의 고령화, 도농 간의 지역발전 격차,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 서비스 시설의 도시편중 등 불리한 환경에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통합적인 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노인복지 관련 자원을 개발,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대식 등(2000)은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에서 대전·충남권 4개 부락의 60세 이상 노령 농업인 105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및 가족유형, 영농실태, 주거상황, 경제적 상태, 생활만족도, 노후 생활 및 사회보험, 건강 및 의료 등에 대하여 심층 조사하였다. 노령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대책을 기본 방향, 기초생활보장 대책, 영농 활동에서의 대책, 농외취업 및 부업에서의 대책, 그리고 기타 대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농 활동에서의 대책으로는 노령 농업인 유형별 농정 대책 수립, 새로운 농업 분야의 발굴 및 보급, 노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작목 및 영농교육의 개발, 농가도우미 제도의 활용, 마을 실버농장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농외취업 및 부업에서의 대책으로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되 특히 농한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거리가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령 농업인에게 연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전소득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한정자 등(2002)은 “농촌 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에서 전국의 52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노인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농촌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주거 및 생활용품 보유 현황,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여가활동 및 이용희망 프로그램, 가치관, 노후 생활설계 및 준비, 소득보장 현황, 의료보장 현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등이었다. 농촌 노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소득보장정책, 의료정책, 복지 서비스, 주택정책, 사회적 서비스 정책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여성노인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는 몇 가지 문항(농사일 참여 정도, 농사일 참여 이유, 수입원, 월 소득,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간략하게 조사했으며, 농외 취업 실태에 관한 것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정경희 등(2003)은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 과제”에서 배경적 특성, 자녀와의 거주거리 및 가치관, 경제상태, 건강 상태, 여가활동 실태, 복지욕구 등에 관해서 도시지역, 도·농 혼합지역,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을 비교하였다. 노인의 경제 상태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29.0%가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17.1%)에 비하여 농·어촌지역(49.1%)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약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정년 연령이 없는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등으로 구성된 사적 이전소득이 가장 큰 소득원인데 반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일·직업에 의한 근로소득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화, 한경혜(2003)는 “농촌 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영역 중 농사일 참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가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32개 시·군에서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총 1,226명의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사가 면접 조사한 것이다. 농사일 참여 정도는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여가활동 참여는 농촌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농사일 참여를 ‘농사일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했으며,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소득 실태를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다룬 것이 아니라 생활 실태나 복지 실태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은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실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경제활동의 농업적·비 농업적 측면, 농업·농외·이전 소득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농촌 노인들의 영농 활동,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을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의 주체로 인식한다.

### 3. 연구 범위 및 내용

####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 노인이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및 농

업 이외 분야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포괄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근로(work)를 통한 소득으로서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성된다. 자산소득은 시장(market)을 통한 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개인연금,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state)를 통한 소득으로서 공적 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family)이나 친지 등을 통한 소득으로서 자녀, 친척 등 비공식 지원 망으로부터의 보조로 구성된다.

### 3.2. 연구의 주요 내용

-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동향 및 전망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 농촌 노인의 소득 실태
- 농촌 노인의 소비와 저축·부채 실태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농촌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
- 정책적 함의

## 4. 연구방법

### 4.1.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주요 자료 수집은 기존자료 조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외국의 사례의 수집·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기존자료 조사는 농림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 수집,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는 대도시 근교, 평야, 중간, 산간 지역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충청남도 및 경기도의 8개의 행정부락의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외국의 사례의 분석의 경우는 일본, 대만, 독일의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외국의 사례는 기존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노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메일(E-mail), 전화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 4.2. 자료 분석 방법

기존자료 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는 SPSS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 및 교차표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교차표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가족유형, 연령, 성별, 지역, 만성질환, 농가 여부)에 따른 경제활동 및 소득 분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타 심층면접 및 관찰방법의 조사 결과는 서술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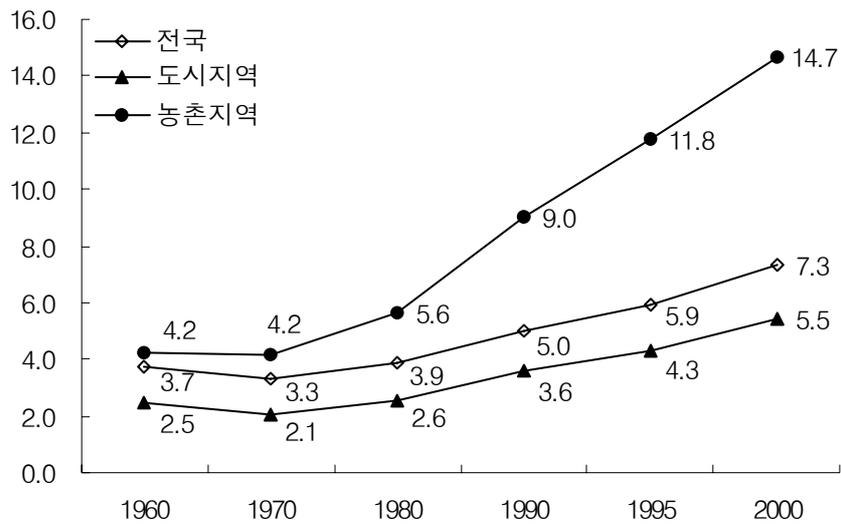
#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동향과 전망

### 1. 농촌 인구의 노령화 동향

농촌(읍·면지역)인구는 1970년의 1,850만 명(전체 인구의 58.8%)에서 2000년의 930만 명(전체 인구의 20.0%)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58.8%에서 2000년의 20.0%로 감소하였다. 즉, 지난 30년 동안 농촌 인구는 연평균 2.3%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그리고 <그림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나 전국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1960년의 2.5%에서 2000년의 5.5%로 증가했고, 전국평균은 1960년의 3.7%에서 2000년의 7.3%로 증가한데 비해서 농촌은 1960년의 4.2%에서 2000년의 14.7%로 급증했다. 즉, 농촌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 동향



<표 2-1>에는 지역별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노년 부양비(15-64세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도시가 1970년의 3.4에서 2000년의 7.5로 증가한 데 비해서, 농촌은 1970년의 8.2에서 2000년의 22.0으로 증가했다. 노령화 지수(0~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는 도시가 1970년의 5.4에서 2000년의 25.3으로 증가한 데 비해서, 농촌은 1970년의 9.3에서 2000년의 78.7로 증가했다. 즉, 2000년 당시 농촌의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도시의 약 3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7.9%에서 2000년의 33.0%, 2003년 39.0%로 급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총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11.5%에서 2000년의 21.7%로 증가하였다. 즉, 농가인구는 이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노령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경영주의 연령으로 볼 때는 노령화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농가 경영주 중에서 6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1981년의 21.5%에서 2000년의 51.0%로 늘어나 이제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선 상태이다. 농가경영주 중에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1990년의 18.3%에서 2000년의 32.7%로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농가 경영주가 대부분 60세 부근에 있는 노령 층이며 전체 농가 경영주 중 30대 미만의 젊은 층은 0.5%밖에 안 된다(표 2-3 참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갈수록 젊은 농업인의 수가 줄고 노령 농업인 수는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지역별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1970-2000

연 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70	3.4	8.2	5.4	9.3
1980	4.0	9.5	7.9	15.7
1990	5.1	15.8	13.6	35.3
1995	6.0	17.3	18.4	58.6
2000	7.5	22.0	25.3	78.7

주 1) 노인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5세 미만 인구)×100

2)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0~15세 미만 인구)×100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각 연도.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각 연도.

표 2-2. 연령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령 연도	계	10~14	15~19	20~49	50~59	60세 이상		
						60~64	65세 이상	
1970	14,422 (100.0)	6,271 (43.5)	1,497 (10.4)	4,404 (30.5)	1,107 (7.7)	1,143 (7.9)	-	-
1975	13,244 (100.0)	5,200 (39.3)	1,560 (11.8)	1,455 (11.0)	1,108 (8.4)	1,164 (8.8)	-	-
1980	10,827 (100.0)	3,230 (29.8)	1,684 (15.6)	1,371 (12.7)	1,074 (9.9)	1,138 (10.5)	-	-
1985	8,521 (100.0)	2,114 (24.8)	1,271 (14.9)	983 (11.5)	1,129 (13.3)	1,177 (13.8)	-	-
1990	6,661 (100.0)	1,370 (20.6)	734 (11.0)	810 (12.2)	1,111 (16.7)	1,187 (17.8)	418 (6.3)	769 (11.5)
1995	4,851 (100.0)	680 (14.0)	423 (8.7)	574 (11.8)	867 (17.9)	1,255 (25.9)	470 (9.7)	785 (16.2)
2000	4,031 (100.0)	459 (11.4)	262 (6.5)	1,301 (32.3)	676 (16.8)	1,333 (33.0)	457 (11.3)	876 (21.7)
2003	3,530 (100.0)	377 (10.7)	177 (5.0)	1,019 (28.9)	580 (16.4)	1,377 (39.0)	-	-

자료: 통계청, 『농업기본통계 조사 결과』, 2004년 및 각 연도.

<표 2-4>에는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 경영주는 고령화되었더라도 젊은 후계농업인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농림어업 취업자 중에서 30세 미만의 젊은 층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에 반해서 노령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1970년에 6.4%에서 1975년에 8.6%로, 1980년에는 11.2%, 1985년 15.1%, 1990년 23.7%, 1995년 36.1%, 2000년 43.3%, 2003년 50.5%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1995년의 17.9%에서 2000년 26.4%, 2003년 33.1%로 증가했다. 즉, 현재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중의 1/3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3. 농업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단위: 천 호, (%)

연도	총 농가	30세미만	30~49	50~59	60세 이상		
					60~64	65세 이상	
1981	2,030 (100.0)	104(5.1)	936(46.1)	555(27.3)	435(21.5)	-	-
1985	1,926 (100.0)	84(4.4)	789(41.0)	582(30.2)	493(25.9)	-	-
1990	1,767 (100.0)	37(2.1)	594(33.6)	584(33.0)	552(31.3)	229(13.0)	323(18.3)
1995	1,501 (100.0)	12(0.8)	406(27.1)	447(29.8)	635(42.3)	264(17.5)	371(24.8)
2000	1,383 (100.0)	7(0.5)	322(23.3)	348(25.2)	706(51.0)	254(18.3)	452(32.7)

자료: 농림부, 『농업 관련 주요 통계』, 2004년 및 각 연도.

표 2-4.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단위: 천명, %)

연 도	계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세 이상		
											60 ~64	65+	
'70	4,846 (100.0)	639 (14.3)	440 (9.1)	454 (9.4)	617 (12.7)	643 (13.3)	539 (11.1)	519 (10.7)	385 (7.9)	301 (6.2)	309 (6.4)	-	-
'75	5,339 (100.0)	616 (11.5)	483 (9.0)	460 (8.6)	499 (9.3)	678 (12.7)	631 (11.8)	549 (10.3)	508 (9.5)	454 (8.5)	461 (8.6)	-	-
'80	4,654 (100.0)	229 (4.9)	377 (8.1)	343 (7.4)	387 (8.3)	511 (11.0)	652 (14.0)	657 (14.1)	513 (11.0)	466 (10.0)	520 (11.2)	-	-
'85	3,733 (100.0)	69 (1.8)	194 (5.2)	305 (8.2)	312 (8.4)	369 (9.9)	438 (11.7)	559 (15.0)	515 (13.8)	409 (11.0)	564 (15.1)	-	-
'90	3,237 (100.0)	20 (0.6)	62 (1.9)	139 (4.3)	227 (7.0)	267 (8.2)	309 (9.5)	391 (12.1)	553 (17.1)	503 (15.5)	766 (23.7)	-	-
'95	2,541 (100.0)	5 (0.2)	29 (1.1)	54 (2.1)	118 (4.6)	206 (8.1)	230 (9.1)	274 (10.8)	304 (12.0)	404 (15.9)	917 (36.1)	368 (14.5)	455 (17.9)
'00	2,243 (100.0)	5 (0.3)	28 (1.2)	47 (2.0)	79 (3.4)	140 (6.3)	191 (8.6)	213 (9.6)	238 (10.1)	315 (15.2)	988 (43.3)	395 (17.6)	593 (26.4)
'03	1,950 (100.0)	4 (0.2)	20 (1.0)	24 (1.2)	42 (2.2)	85 (4.4)	147 (7.5)	194 (9.9)	214 (11.0)	235 (12.1)	985 (50.5)	339 (17.4)	646 (33.1)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2004년 및 각 연도.

## 2. 농촌 노인 인구의 변화 전망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완만했으나 1980년대부터 노령화가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청년·장년층의 농촌으로 전입은 아주 한정적인데 반해서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연령층은 점차 노인 인구 대열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인구(읍·면 지역)의 연령별 인구구조(2000년)를 살펴보면, 40~50대 인구의 비율(24.1%)이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21.3%)보다 높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직장 은퇴 도시민의 거주 목적의 농촌전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노령화 속도는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덕(2003)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0년 21.4%, 2020년 2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부양비는 2000년의 8.2에서 2005년 9.5, 2010년 15.8, 2015년 17.6, 2020년의 22.0으로 증가하고, 노령화 지수는 2000년의 9.3에서 2005년 15.7, 2010년 35.3, 2015년 58.6, 2020년의 78.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2-5 참조).

김정호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1.5%, 1995년 16.2%, 2000년 21.7%였고, 2005년 29.5%, 2010년 34.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노년 부양비는 2000년의 32.5에서 2005년 48.5, 2010년 59.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농가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 190.8에서 2005년 306.2, 2010년 36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 2-6 참조).

표 2-5. 농촌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2000-20

연도	노인(65세 이상)인구 비율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전국	농촌	전국	농촌	전국	농촌
2000	7.2	14.7	3.4	8.2	5.4	9.3
2005	9.0	18.6	4.0	9.5	7.9	15.7
2010	10.7	21.4	5.1	15.8	13.6	35.3
2015	12.6	23.3	14.9	17.6	18.4	58.6
2020	15.1	25.4	7.5	22.0	25.3	78.7

주 : 1)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5세 미만 인구)×100

2)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0~15세 미만 인구)×100

자료 : 김경덕(2003)에서 재구성함.

표 2-6. 농가 노인 인구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전망, 2000~2010

연도	노인(65세 이상)인구 비율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2000	21.7	32.5	190.8
2005	29.5	48.5	306.2
2010	34.0	59.9	365.2

주 : 1)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5세 미만 인구)×100

2)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0~15세 미만 인구)×100

자료 : 김정호 등(2003)에서 재구성함.

## 제 3 장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개요

### 1. 실태조사의 개요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한 현지 실태 조사는 마을조사와 가구 및 개별 농촌 노인 대상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 대상 지역은 대도시 근교지역은 안성시 공도읍 A리 및 B리, 평야지역은 논산시 채운면 C리 및 D리, 중간지역은 부여군 초촌면 E리 및 F리, 산간지역은 금산군 남이면 G리 및 H리이다(실제 부락명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함).

표 3-1. 실태조사 대상 지역

대도시 근교지역	평야지역	중간지역	산간지역
안성시 공도읍 A리 및 B리	논산시 채운면 C리 및 D리	부여군 초촌면 E리 및 F리	금산군 남이면 G리 및 H리

마을조사는 이장, 마을유지, 읍·면사무소 담당자, 기타 마을 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가구 및 개별 농촌 노인 대상의 심층 면접 설문조사는 8개 부락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노인들이 가구 관련 사항을 잘 모를 경우에는 비 노인 가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 후 응답이 부실한 경우에는 전화, 추후 방문조사, 이장의 확인 등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심층 면접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대도시 근교마을 87명, 평야마을 45명, 중간마을 35명, 산간마을 33명으로 총 200명이다.

## 2. 마을 단위 조사

### 2.1. 대도시 근교 마을

안성시 공도읍 A리와 B리는 공도읍 소재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서로 인접해 있는 전형적인 대도시 근교 마을이다. 최근 마을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A리의 가구 수(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 기준)는 65가구(인구수는 약 145명)이며 이 중에서 40가구(61.5%)가 비농가이고 25가구(38.5%)가 농가이다. A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B리의 가구 수는 75가구(인구수는 약 190명)이며 이 중에서 20가구(26.7%)가 비농가이고 55가구(73.3%)가 농가이다. B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마을에는 위장전입자 및 임시거주 목적의 유동가구가 각각 연간 20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리는 각성부락이고 B리는 최씨 동족부락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족부락인 B리가 각성부락인 A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B리의 주민은 A리의 주민에 비해서 농외취업이나 농한기 부업에 대한 욕구가 낮았다.

마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은 주로 아파트 경비, 막노동, 공장의 단순노동 등이었다. 노임(일당)은 남자는 6~7만원, 여자는 3~4만원 정도이며 주로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작업료(200평당)는 모내기 15,000~20,000원, 경운·정지 26,000~28,000원, 수확 28,000~30,000원으로 나타났다.

영농작업에 있어서 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벼농사의 경우에는 육묘, 보식, 물 관리, 제초, 논두렁 관리, 수확보조 등이었다. 과수농사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수분, 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병충해방제 보조, 수확, 선별, 포장 등이었다.

몇 개 부락이 연합하여 벼, 채소, 배 관련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 사업연합(5개 농협이 중심이 됨) 형태의 농업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A리와 B리를 관할하는 농협은 아직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노령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시기는 주로 75~80세 정도이며, 아파서 농사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단계가 아닌 이상 대체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다.

품앗이는 노령 농가 위주로 일부 남아 있다. 젊은 층에서는 ‘고집이 세다’ 등의 이유로 노인고용을 기피하고 인력시장을 이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주로 40~50대 여성)을 충당하고 있다. 노령 농업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든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

농지임차료는 논은 200평 당 쌀 1가마이고, 밭은 평당 300~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의 휴경은 부재지주(서울, 평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의 밭을 중심으로 일부 발생하고 있다. 휴경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노령연금(농어민연금) 수혜 가구 비율은 각각 전체 가구의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2. 평야 마을

논산시 채운면의 C리와 D리는 채운면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평야마을이다. 채운면은 논산시의 남서 하단부에 위치하고 강경읍과 인접해 있으며 수리 안전율 100%인 논 농업 지역이다. 논산과 강경을 연결하는 23번 국도가 채운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C리의 가구 수는 52가구(인구수는 약 130명)이며 이 중에서 32가구(61.5%)가 비농가이고 17가구(32.7%)가 농가이다. C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D리의 가구 수는 70가구(인구수는 약 180명)이며 이 중에서 42가구(60.0%)가 비농가이고 28가구(40.0%)가 농가이다. D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C리 및 D리로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값싼 주거지를 찾는 부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은 주로 부녀자 중심의 공장노동(예를 들면, 국수공장, 잠바공장, 햄 공장 등)과 단청, 막노동 등이다. 노임(일당)은 남자는 6만원, 여자는 2만 5천원~3만원 정도이며 최근에는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농기계 임작업료(200평당)는 모내기 15,000원, 경운·정지 28,000원, 수확 28,000원으로 나타났다.

영농작업에 있어서 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벼농사의 경우에는 육묘, 보식, 물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논두렁 관리, 농기계작업 보조, 짚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채소농사(특히 딸기)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수분, 열매숙기, 김매기, 수확, 선별, 포장 등이었다. 시설채소의 고용노동은 주로 40~50대의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령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시기는 주로 75세 전후이며, 아프거나 기력이 너무 쇠진하여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는 벼농사 분야에서는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졌고, 딸기농사에서는 작목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없어졌다.

농지임차료는 논은 200평 당 쌀 2가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밭은 텃밭 정도밖에 없어서 임대차 거래가 거의 없었다.

전체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 가구 비율은 10% 정도이고, 특례노령연금(농어민연금) 수혜 가구 비율은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중간 마을

부여군 초촌면은 부여군의 동부에 있다. 초촌면 E리는 면 소재지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초촌면 F리는 면 소재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 논산-부여간 4번 국도상의 십자가(석성면 소재지)까지는 3~4km 정도 거리이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E리의 가구 수는 27가구(인구수는 약 65명)이며 이 중에서 4가구(14.8%)가 비농가이고 23가구(85.2%)가 농가이다. E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0.8%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F리의 가구 수는 50가구(인구수는 약 125명)이며 이 중에서 20가구(40.0%)가 비농가이고 30가구

(60.0%)가 농가이다. F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은 주로 부녀자 중심의 공장노동(예를 들면, 도계장, 자동차부품 공장 등), 막노동, 식당일 등이다. 노임(일당)은 남자는 5만원, 여자는 3만 5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임작업료(200평당)는 모내기 20,000원, 경운·정지 30,000원, 수확 30,000원으로 나타났다.

영농작업에 있어서 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벼농사의 경우에는 육묘, 보식, 물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논두렁 관리, 농기계작업 보조, 짚 관리 등이었다. 시설채소농사(특히 딸기)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수분, 열매숙기, 김매기, 수확, 선별, 포장 등이었다.

휴경은 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밭을 중심으로 간혹 발생하고 있다.

노령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시기는 주로 75세 전후이며, 아프거나 기력이 너무 쇠진하여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는 벼농사에서는 오래 전에 완전히 사라졌고, 시설채소(수박, 오이 등)농가에서는 비닐 온실 설치 시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임차료는 논은 200평 당 쌀 1~1.5가마이고, 밭은 평당 500~600원(인삼밭은 평당 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노령연금(농어민연금) 수혜 가구 비율은 각각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4. 산간 마을

금산군 남이면은 금산군의 남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남이면 G리와 H리는 남이면의 남부에 있는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다. G리와 H리는 남이면 소재지인 하금리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G리의 가구 수는 28가구(인구수는 45명)이며 이 중에서 8가구(28.6%)가 비농가이고 20가구(71.4%)가 농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1%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기준으로 H리의 가구 수는 45가구(인구수는 약 80명)이며 이 중에서 12가구(26.7%)가 비농가이고 33가구(73.3%)가 농가이다. H리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은 주로 부녀자들의 공장노동(예를 들면, 식품공장 등), 막노동, 농산물가공 등이다. 노임(일당)은 남자는 3~5만원, 여자는 2만원~2만 5천원이었다.

농기계 임작업료는 모내기는 200평당 35,000원, 경운·정지는 1일 30,000원, 수확은 200평당 35,000원으로 나타났다.

영농작업에 있어서 노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벼농사의 경우에는 육묘, 보식, 물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논두렁 관리, 농기계작업 보조 등이었다. 인삼농사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삼포 만들기, 파종, 이식, 병충해 방제, 제초, 도난 감시, 수확, 선별, 포장 등이었다.

휴경은 기계가 잘 진입할 수 없는 경사지의 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령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시기는 주로 75~80세이며, 아프거나 기력이 너무 쇠진하여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는 벼농사와 인삼농사에서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지임차료는 논은 200평 당 쌀 1~1.5가마이고, 밭은 평당 500~600원(인삼밭은 평당 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특례노령연금(농어민연금) 수혜 가구 비율은 각각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3-2>에는 가구 및 개별 단위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근교마을이 응답자가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65~69세가 59명(29.5%), 70~74세가 59명(29.5%), 75세 이상이 82명(41.0%)이며, 평균연령은 74세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27명(63.5%), ‘사별’이 70명(35.0%), ‘별거 또는 이혼’이 3명(1.5%)이고, 가족의 구성 형태는 노인 단독 41명(20.5%), 노인 부부 89명(44.5%), 자녀 동거 57명(28.5%), 기타 13명(6.5%)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가족구성 형태는 노인가구(노인 단독+노인 부부)가 약 65.0%이고, 자녀 동거 가구가 28.5%이다.

표 3-2.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지 역	대도시 근교	87(43.5)
	평야	45(22.5)
	중간	35(17.5)
	산간	33(16.5)
연 령	65~69세	59(29.5)
	70~74세	59(29.5)
	75세 이상	82(41.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27(63.5)
	사별	70(35.0)
	별거 또는 이혼	3( 1.5)
가족유형	노인 단독	41(20.5)
	노인 부부	89(44.5)
	자녀 동거	57(28.5)
	기타	13( 6.5)
농가 여부	전업농가	105(52.5)
	겸업농가	27(13.5)
	비농가	68(34.0)
성별	남성	84(42.0)
	여성	116(58.0)
교육 수준	무학	108(54.0)
	국졸	69(34.5)
	중졸	14( 7.0)
	고졸 이상	9( 4.5)
만성질환	있음	129(64.5)
	없음	71(35.5)

농가 여부로는 전업농가 105가구(52.5%), 겸업농가 27가구(13.5%), 비농가 68가구(34.0%)로 나타나 응답자의 66.0%가 농가인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 분포는 남성 84명(42.0%), 여성 116명(58.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 108명(54.0%), 국졸 69명(34.5%), 중졸 14명(7.0%), 고졸 이상 9명(4.5%)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88.5%)은 교육수준이 국졸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1개월 이상)은 '있음' 129명(64.5%), '없음' 71명(35.5%)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2/3 정도가 현재 1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4 장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 1. 영농 관련 실태

#### 1.1. 영농 참여 정도

<그림 4-1>에는 ‘어르신께서는 농사일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영농 참여 정도는 ‘대부분 내가 한다(대부분 내가 함)’ 29.5%, ‘다른 사람(배우자, 자식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 한다(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 13.5%, ‘주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일부 거든다(일부 거듬)’ 13.5%, ‘과거에는 농사일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현재는 불참)’ 36.0%, ‘과거에도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참여한 적이 없음)’ 7.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는 한정자 등(2002)의 조사 결과(50.6%)와 비슷하다. 그리고 응답자의 92.5%가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농사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4-1>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 참여 정도(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가 제시되어 있다.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일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영농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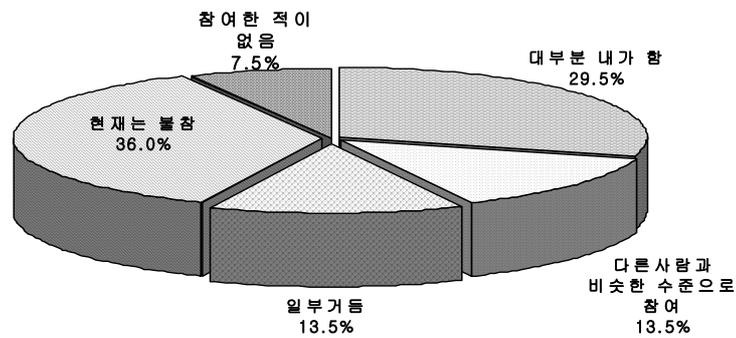


표 4-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 참여 정도

단위: 명, %

구 분	영농참여 정도		계	통계	
	참여	비 참여			
가족 유형	노인 단독	15(36.6)	26(63.4)	41(100.0)	$\chi^2 = 17.16$ df = 2 P < .001
	노인 부부	64(71.9)	25(28.1)	89(100.0)	
	자녀 동거	27(47.4)	30(52.6)	57(100.0)	
	계	106(56.7)	81(43.3)	187(100.0)	
연령 계층	65~74세	80(67.8)	38(32.2)	118(100.0)	$\chi^2 = 14.94$ df = 1 P < .001
	75세 이상	33(40.2)	49(59.8)	82(100.0)	
	계	113(56.5)	87(43.5)	200(100.0)	
성별	남성	56(66.7)	28(33.3)	84(100.0)	$\chi^2 = 6.09$ df = 1 P < .05
	여성	57(49.1)	59(50.9)	116(100.0)	
	계	113(56.5)	87(43.5)	200(100.0)	

## 1.2. 농지 소유 및 경작

<표 4-2>에는 농지(논, 밭, 과수원) 소유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농지소유 규모는 ‘농지 없음’ 34.5%, ‘1,500평 이하’ 22.5%, ‘1,501~3,000평’ 21.5%, ‘3,001~6,000평’ 16.0%, ‘6,001평 이상’ 5.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78.5%)이 1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표 4-3>에는 경작면적(경작자 132명만을 대상으로 함)이 제시되어 있다. 즉, 경작면적은 ‘1,500평 이하’ 35.6%, ‘1,501~3,000평’ 35.6%, ‘3,001~6,000평’ 14.4%, ‘6,001평 이상’ 14.4%로 나타났다. 즉, 경작자의 대다수(71.2%)가 1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논을 빌려 준 가구는 총 경작자의 21.2%(28명), 밭을 빌려 준 가구는 5.3%(7명)이며, 논을 빌린 가구는 총 경작자의 20.5%(27명), 밭을 빌린 가구는 12.1%(16명)로 나타났다.

농지의 휴경은 주로 중산간지역의 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 근교지역의 경우는 부재지주의 밭에서 휴경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4-2. 농지 소유 규모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농지 없음)	69	34.5
1,500평 이하	45	22.5
1,501~3,000평	43	21.5
3,001~6,000평	32	16.0
6,001평 이상	11	5.5
계	200	100.0

표 4-3. 경작면적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1,500평 이하	47	35.6
1,501~3,000평	47	35.6
3,001~6,000평	19	14.4
6,001평 이상	19	14.4
계	132	100.0

주: 비농가 68호는 제외함.

### 1.3. 농기계 및 자동차 소유

농가(132가구) 중에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45.5%(60호)이며, 농기계 소유 농가의 55.0%가 2대 이상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트랙터, 콤파인 등과 같은 대형 농기계는 자녀동거가구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다. 노령 농업인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선별기, 동력분무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자동차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승용차 14.5%(29호), 트럭 8.0%(16호)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가구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다.

### 1.4. 고용노동력 및 농기계 위탁 작업

연간 고용노동력(농기계 위탁 작업 및 품앗이 제외)을 사용하는 비율은 농가의 30.3%(40호)이며, 연평균 고용인원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 사항은 고용인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농기계 위탁 작업을 하는 농가의 비율은 68.2%(90호)인데 특히 벼 농사의 경우에 보편화되어 있다. 농기계 위탁 작업은 일정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노령 농업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 1.5. 품앗이 이용

품앗이를 이용하는 농가 수는 7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앗이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작목반이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영농교육·훈련

<표 4-4>에는 ‘어르신께서는 지난 3년 동안(중양, 도, 군, 읍, 면 등), 농업인 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영농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113명)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영농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6%(38명)로 나타났다. 영농교육이나 훈련은 주로 벼(25명), 고추(6명), 잡곡(3명), 딸기(2명), 인삼(2명) 등에 관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교육내용이나 수준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불평을 많이 하였다.

표 4-4. 영농 교육·훈련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받은 적이 없다.	75	66.4
받은 적이 있다.	38	33.6
계	113	100.0

<표 4-5>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교육·훈련 경험(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영농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동거 가구의 노인이 영농교육·훈련 경험이 낮은 이유는 동거자녀가 노인에 우선하여 영농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5.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교육·훈련 경험

단위: 명, %

구 분		영농교육·훈련 경험		계	통계
		있음	없음		
가족 유형	노인 단독	3(20.0)	12(80.0)	15(100.0)	$\chi^2 = 7.55$ df = 2 P < .05
	노인 부부	28(45.2)	34(54.8)	62(100.0)	
	자녀 동거	5(18.5)	22(81.5)	27(100.0)	
	계	36(34.6)	68(65.4)	104(100.0)	
성별	남성	30(54.5)	25(45.5)	55(100.0)	$\chi^2 = 19.98$ df = 1 P < .001
	여성	8(14.3)	48(85.7)	56(100.0)	
	계	38(34.2)	73(65.8)	111(100.0)	
만성 질환	있음	17(26.2)	48(73.8)	65(100.0)	$\chi^2 = 4.55$ df = 1 P < .05
	없음	21(45.7)	25(54.3)	46(100.0)	
	계	38(34.2)	73(65.8)	111(100.0)	

### 1.7. 영농에 있어서 노인들의 주요 역할

영농에 있어서 노인들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벼농사에서는 물 관리, 육묘, 보식, 논두렁 관리, 시비, 병충해 방제, 제초, 수확 보조, 쪼 관리, 농기계 작업 보조 등이고, 과수농사에서는 수분, 적과(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전정 보조, 수확, 선별, 병해충 방제, 조수 퇴치, 봉지 씌우기, 포장, 수분 등으로 나타났다. 채소농사에서는 파종, 이식, 시비, 제초, 물 관리, 수확, 선별, 포장 등에, 축산에서는 사료 급여, 분뇨 치우기, 가축 위생 등에서 노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1.8. 농사일 부담 정도

<표 4-6>에는 ‘어르신께서는 현재 하시고 있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농사일 부담(현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상) 정도는 ‘감당하기 무척 힘들다’ 52.2%, ‘힘들다’ 34.5%, ‘감당하기 힘들지 않다’ 13.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86.7%가 농사일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다. 이 결과는 박대식 등(1996)의 조사 결과(88.2%)와 비슷하다.

표 4-6. 농사일 부담 정도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감당하기 무척 힘들다.	59	52.2
힘들다.	39	34.5
감당하기 힘들지 않다.	15	13.3
계	113	100.0

### 1.9. 농사일 이유

<표 4-7>에는 ‘어르신께서 농사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즉, 농사일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52.2%,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21.2%, ‘일손이 모자라서’ 6.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5.3%,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 5.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8% 등으로 나타났다. 한정자 등(2002)의 연구에서는 농사일을 하는 중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33.6%,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19.7%,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13.0% 등이었다.

표 4-7. 농사일 이유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돈이 필요해서	59	52.2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24	21.2
일손이 모자라서	7	6.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6	5.3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	6	5.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2	1.8
기타	9	8.0
계	113	100.0

### 1.10. 농지 처리 방법

<표 4-8>에는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

농지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농지 처리 방법으로는 ‘자식에게 맡기거나 상속해 줌’ 52.2%,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게 함’ 26.6%,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9.7% 등으로 나타났다. 박대식 등(1996)의 조사 연구에서는 주요 농지 처리 방법은 ‘자식에게 상속’ 68.5%, ‘타인에게 임대’ 11.6% 등의 순이었다. 본 조사와 박대식 등(1996)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식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사람은 상당히 감소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겠다는 사람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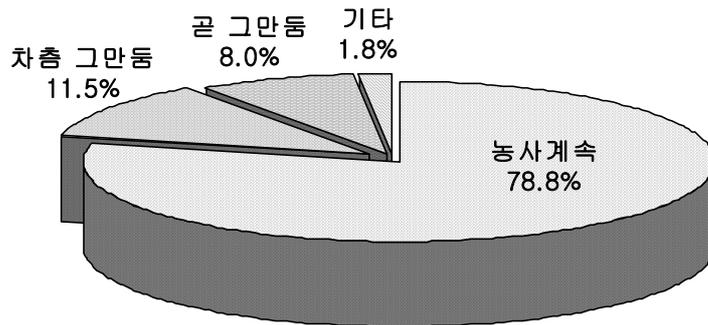
표 4-8. 농지 처리 방법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자식에게 맡기거나 상속해 줌.	59	52.2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게 함.	30	26.6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11	9.7
기타	13	11.5
계	113	100.0

### 1.11. 영농 지속 의사 및 농사규모 계획

<그림 4-2>에는 ‘어르신께서는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으실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즉, 영농지속 의사는 ‘거동할 수 있는 한 계속 농사를 짓겠다(농사 계속)’ 78.8%, ‘차츰 그만두겠다(차츰 그만둬)’ 11.5%, ‘곧 그만두겠다(곧 그

그림 4-2. 영농 지속 의사



만둬’ 8.0%, ‘기타(잘 모르겠다)’ 1.8%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78.8%)이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임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현재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113명) 중의 29.2%(33명)는 연령이 75세 이상이었다. 마을조사에서도 일반적인 영농 은퇴 연령이 7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농업인들의 실질적 영농 은퇴 연령은 75세 전후임을 알 수 있다.

<표 4-9>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농 지속 의사(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 영농 지속 의사뿐임)가 제시되어 있다. 대도시 근교 및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영농 지속 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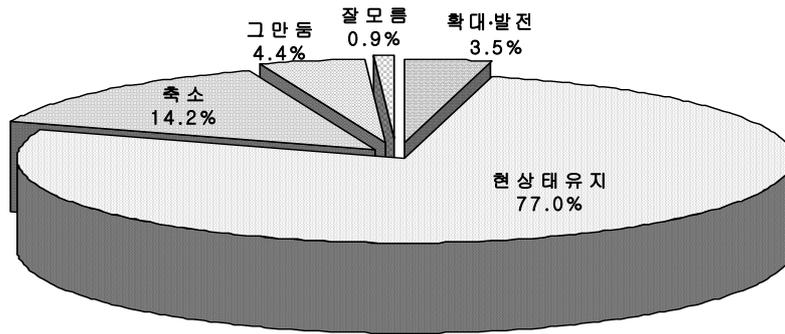
<그림 4-3>에는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농사규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농사규모 계획은 ‘좀 더 확대·발전시키고 싶다(확대·발전)’ 3.5%,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현 상태 유지)’ 77.0%, ‘현 상태를 축소하고 싶다(축소)’ 14.2%, ‘모두 그만두고 싶다(그만둬)’ 4.4%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응답자들(80.5%)이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지역별 영농 지속 의사

단위: 명, %

구 분		영농지속 의사		계	통계
		계속	중단		
지역	대도시 근교	43(93.5)	3( 6.5)	46(100.0)	$\chi^2 = 16.76$ $df = 3$ $P < .01$
	평야	16(69.6)	7(30.4)	23(100.0)	
	중간	12(54.5)	10(45.5)	22(100.0)	
	산간	17(89.5)	2(10.5)	19(100.0)	
	계	88(80.0)	22(20.0)	110(100.0)	

그림 4-3. 농사규모 계획



<표 4-10>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사규모 계획(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별 농사규모 계획뿐임)이 제시되어 있다. 대도시 근교 및 평야 지역이 상대적으로 농사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응답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지역별 농사규모 계획

단위: 명, %

구 분	농사규모 계획		계	통계	
	유지 또는 확대·발전	축소 또는 중단			
지역	대도시 근교	44(93.6)	3( 6.4)	47(100.0)	$\chi^2 = 11.32$ df = 3 P < .05
	평야	20(83.3)	4(16.7)	24(100.0)	
	중간	14(63.6)	8(36.4)	22(100.0)	
	산간	13(68.4)	6(31.6)	19(100.0)	
	계	91(81.3)	21(18.8)	112(100.0)	

## 1.12. 농촌 노인에게 적합한 농사일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농사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벼농사(83명), 밭(잡곡)농사(5명), 고추농사(5명), 인삼농사(2명), 양봉(2명), 버섯재배(2명), 노지채소재배(2명)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41.5%가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농사일은 벼농사라고 대답을 했다.

## 2.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실태

### 2.1.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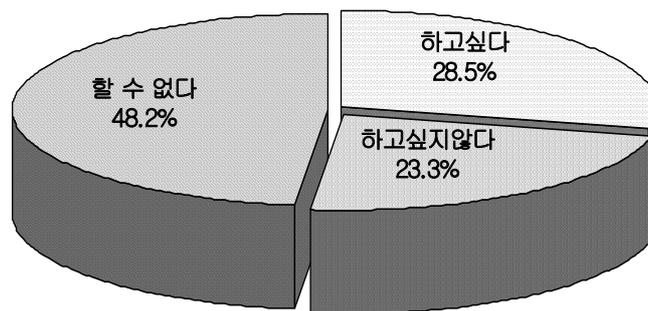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었으며, 농외 경제활동 분야는 막노동, 경비, 상업(가게 운영) 등이었다.

<표 4-11>에는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6.1%, ‘나이가 너무 많아서’ 21.3%,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20.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5.2% 등이었다. 즉,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건강이 나쁘거나 연로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20.2%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1.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건강이 좋지 않아서	89	46.1
나이가 너무 많아서	41	21.3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39	20.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10	5.2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4	2.1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으로)	2	1.0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2	1.0
집안일 또는 가족수발 때문에	1	0.5
기타	5	2.6
계	193	100.0

그림 4-4.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의사



<그림 4-4>에는 ‘(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났다.

<표 4-12>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의사(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가 제시되어 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리고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사일 이외에 하고 싶은 경제활동으로는 경비(13명), 농한기 부업(8명), 앉아서 할 수 있는 일(7명), 쉬운 일(5명), 무엇이랄도(5명), 막노동(3명), 공공근로사업(2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의사

단위: 명, %

구 분		농사일 이외 경제활동 참여의사			계	통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할 수 없다		
지역	대도시 근교	17(20.2)	13(15.5)	54(64.3)	84(100.0)	$\chi^2 = 17.35$ df = 6 P < .01
	평야	13(29.5)	15(34.1)	16(36.4)	44(100.0)	
	중간	12(36.4)	8(24.2)	13(39.4)	33(100.0)	
	산간	13(40.6)	9(28.1)	10(31.3)	32(100.0)	
	계	55(28.5)	45(23.3)	93(48.2)	193(100.0)	
만성 질환	있음	31(24.2)	26(20.3)	71(55.5)	128(100.0)	$\chi^2 = 8.10$ df = 2 P < .05
	없음	24(36.9)	19(29.2)	22(33.8)	65(100.0)	
	계	55(28.5)	45(23.3)	93(48.2)	193(100.0)	

## 2.2. 농촌 노인에게 알맞은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

‘어르신께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15명), 경비(6명), 농한기 부업(6명), 공장일(5명), 농산물 가공(3명), 막노동(2명), 공공근로사업(2명), 마을공동부업(2명) 등이었다. 참고로, 그런 것(농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은 없고 농촌 노인에게는 농사일이 제일 알맞다는 의견도 많았다.

## 3. 경제상태

### 3.1. 가정경제 상태

<표 4-13>에는 ‘현재 귀댁의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경제 상태가 ‘매우 여유가 있다’ 0.5%, ‘여유가 있는 편이다’ 9.5%, ‘보통이다’ 38.0%, ‘조금 어려운 편이다’ 26.0%, ‘매우 어렵다’ 26.0%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2.0%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표 4-14>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 인식(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가정경제 상태 인식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매우 여유가 있다.	1	0.5
여유가 있는 편이다.	19	9.5
보통이다.	76	38.0
조금 어려운 편이다.	52	26.0
매우 어렵다.	52	26.0
계	200	100.0

표 4-1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 인식

단위: 명, %

구분	가정경제 상태 인식				계	통계	
	여유 있다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가족 유형	노인 단독	1 ( 2.4)	8 (19.5)	13 (31.7)	19 (46.3)	41 (100.0)	$\chi^2 = 33.47$ df = 6 P < .001
	노인 부부	5 ( 5.6)	37 (41.6)	28 (31.5)	19 (46.3)	89 (100.0)	
	자녀 동거	14 (47.4)	25 (43.9)	7 (12.3)	11 (19.3)	57 (100.0)	
	계	20 (10.7)	70 (37.4)	48 (25.7)	49 (26.2)	187 (100.0)	
연령 계층	65~74세	7 ( 5.9)	52 (44.1)	38 (32.2)	28 (23.7)	118 (100.0)	$\chi^2 = 8.13$ df = 3 P < .05
	75세 이상	13 (15.9)	24 (29.3)	9 (59.8)	24 (29.3)	82 (100.0)	
	계	20 (10.0)	76 (38.0)	87 (43.5)	52 (26.0)	200 (100.0)	
농가 여부	농가	16 (12.1)	56 (42.4)	37 (28.0)	23 (17.4)	132 (100.0)	$\chi^2 = 15.34$ df = 3 P < .01
	비농가	4 ( 5.9)	20 (29.4)	15 (22.1)	29 (42.6)	68 (100.0)	
	계	20 (10.0)	76 (38.0)	52 (26.0)	52 (26.0)	200 (100.0)	

<표 4-15>에는 ‘귀택의 경제상태는 5년 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정경제 상태가 ‘무척 좋아졌다’ 0.5%, ‘약간 좋아졌다’ 13.0%, ‘거의 그대로이다’ 41.0%, ‘약간 나빠졌다’ 29.0%, ‘무척 나빠졌다’ 16.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5.5%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보고 있다.

<표 4-16>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4-15.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무척 좋아졌다.	1	0.5
약간 좋아졌다.	26	13.0
거의 그대로이다.	82	41.0
약간 나빠졌다.	58	29.0
무척 나빠졌다.	33	16.5
계	200	100.0

표 4-16.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

단위: 명, %

구 분		가정경제 상태의 변화 인식				계	통계
		좋아 졌다	거의 그대로	야간 나빠짐	무척 나빠짐		
가족 유형	노인 단독	2 ( 4.9)	16 (39.0)	8 (19.5)	15 (36.6)	41 (100.0)	$\chi^2 = 41.71$ df = 6 P < .001
	노인 부부	5 ( 5.6)	36 (40.4)	37 (41.6)	11 (12.4)	89 (100.0)	
	자녀 동거	18 (31.6)	24 (42.1)	9 (15.8)	6 (10.5)	57 (100.0)	
	계	25 (13.4)	76 (40.6)	54 (28.9)	32 (17.1)	187 (100.0)	
농가 여부	농가	22 (16.7)	58 (43.9)	42 (31.8)	10 ( 7.6)	132 (100.0)	$\chi^2 = 23.51$ df = 3 P < .001
	비농가	5 ( 7.4)	24 (35.3)	16 (23.5)	23 (33.8)	68 (100.0)	
	계	27 (13.5)	82 (41.0)	58 (29.0)	33 (16.5)	200 (100.0)	

### 3.2. 경제 상황 만족도

<표 4-17>에는 ‘어르신께서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경제 상황 만족도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1.5%,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다' 19.5%, '그저 그렇다' 25.0%,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 35.0%,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19.0%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4.0%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응답자의 21.0%만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 상황 만족도(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가 제시되어 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중간지역에서,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경제 상황 만족도

응답 범주	빈도	백분비(%)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3	1.5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	39	19.5
그저 그렇다.	50	25.0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	70	35.0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38	19.0
계	200	100.0

표 4-18.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상황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경제상황 만족도				계	통계
		만족	그저 그렇다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가족 유형	노인 단독	4 (9.8)	6 (14.6)	16 (39.0)	15 (36.6)	41 (100.0)	$\chi^2 = 14.80$ df = 6 P < .05
	노인 부부	20 (22.5)	22 (24.7)	34 (38.2)	13 (14.6)	89 (100.0)	
	자녀 동거	16 (28.1)	16 (28.1)	17 (29.8)	8 (14.0)	57 (100.0)	
	계	40 (21.4)	44 (23.5)	67 (35.8)	36 (19.3)	187 (100.0)	
연령 계층	65~74세	20 (16.9)	31 (26.3)	51 (43.2)	16 (13.6)	118 (100.0)	$\chi^2 = 12.48$ df = 3 P < .01
	75세 이상	22 (26.8)	19 (23.2)	19 (23.2)	22 (26.8)	82 (100.0)	
	계	42 (21.0)	50 (25.0)	70 (35.0)	38 (19.0)	200 (100.0)	
지역	대도시 근교	18 (20.7)	30 (34.5)	24 (27.6)	15 (17.2)	87 (100.0)	$\chi^2 = 23.11$ df = 9 P < .01
	평야	5 (11.1)	4 (8.9)	24 (27.6)	12 (26.7)	45 (100.0)	
	중간	7 (20.0)	8 (22.9)	12 (34.3)	8 (22.9)	35 (100.0)	
	산간	12 (36.4)	8 (22.9)	10 (30.3)	3 (9.1)	33 (100.0)	
	계	42 (21.0)	50 (25.0)	70 (35.0)	38 (19.0)	200 (100.0)	
만성 질환	있음	18 (14.0)	34 (26.4)	50 (38.8)	27 (20.9)	129 (100.0)	$\chi^2 = 11.04$ df = 3 P < .05
	없음	24 (33.8)	16 (22.5)	20 (28.2)	11 (15.5)	71 (100.0)	
	계	42 (21.0)	50 (25.0)	70 (35.0)	38 (19.0)	200 (100.0)	
농가 여부	농가	31 (23.5)	38 (28.8)	45 (34.1)	18 (13.6)	132 (100.0)	$\chi^2 = 9.34$ df = 3 P < .05
	비농가	11 (16.2)	12 (17.6)	25 (36.8)	20 (29.4)	68 (100.0)	
	계	42 (21.0)	50 (25.0)	70 (35.0)	38 (19.0)	200 (100.0)	

#### 4. 노후 생활 대책

응답자들의 가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 생활 대비책(중복 응답)은 저축(18.5%), 공적 연금(12.5%), 농지 매입 또는 임대(10.5%), 보험(5.0%), 각종 계(5.0%), 개인연금(4.0%), 주식·증권 구입(1.5%), 주택 구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무 대책도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6.5%나 되었다.

<표 4-19>에는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얼마나 준비해 두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노후 생활 준비정도는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1.0%, ‘어느 정도 준비해두었다’ 8.0%, ‘조금 밖에 준비를 못했다’ 15.5%, ‘전혀 준비를 못했다’ 75.5%로 나타났다.

<표 4-20>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정도(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가 제시되어 있다.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농가일수록 노후생활을 준비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9. 노후 생활 준비 정도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2	1.0
어느 정도 준비해두었다.	16	8.0
조금 밖에 준비를 못했다.	31	15.5
전혀 준비를 못했다.	151	75.5
계	200	100.0

표 4-2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 명, %

구 분	노후생활 준비 정도			계	통계	
	준비함	조금밖에 준비 못함	전혀 준비 못함			
지역	대도시 근교	15 (17.2)	14 (16.1)	58 (66.7)	87 (100.0)	$\chi^2 = 15.22$ df = 6 P < .05
	평야	2 (4.4)	5 (11.1)	38 (84.4)	45 (100.0)	
	중간	0 (0.0)	5 (14.3)	30 (85.7)	35 (100.0)	
	산간	1 (3.0)	7 (21.2)	25 (75.8)	33 (100.0)	
	계	18 (9.0)	31 (15.5)	151 (75.5)	200 (100.0)	
농가 여부	농가	17 (12.9)	22 (16.7)	93 (70.5)	132 (100.0)	$\chi^2 = 8.14$ df = 2 P < .05
	비농가	1 (1.5)	9 (13.2)	58 (85.3)	68 (100.0)	
	계	18 (9.0)	31 (15.5)	151 (75.5)	200 (100.0)	

<표 4-21>에는 ‘어르신께서는 노후의 생활비는 누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으로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35.5%,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36.5%,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6.5%, ‘기타’ 1.5%로 나타났다.

<표 4-22>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활비 마련의 책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농가일수록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21. 노후 생활비 마련의 책임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71	35.5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73	36.5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53	26.5
기타	3	1.5
계	200	100.0

표 4-2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 생활비 마련의 책임

단위: 명, %

구분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			계	통계	
	자신이 스스로	자녀 및 가족	국가			
연령계층	65~74세	54 (46.6)	36 (31.0)	26 (22.4)	116 (100.0)	$\chi^2 = 13.52$ df = 2 P < .01
	75세 이상	17 (21.0)	37 (45.7)	27 (33.3)	81 (100.0)	
	계	71 (36.0)	73 (37.1)	53 (26.9)	197 (100.0)	
만성질환	있음	43 (33.9)	42 (33.1)	42 (33.1)	127 (100.0)	$\chi^2 = 7.06$ df = 2 P < .05
	없음	28 (40.0)	31 (44.3)	11 (15.7)	70 (100.0)	
	계	71 (36.0)	73 (37.1)	53 (26.9)	197 (100.0)	
농가여부	농가	50 (38.2)	53 (40.5)	28 (21.4)	131 (100.0)	$\chi^2 = 6.15$ df = 2 P < .05
	비농가	21 (31.8)	20 (30.3)	25 (37.9)	66 (100.0)	
	계	71 (36.0)	73 (37.1)	53 (26.9)	197 (100.0)	

## 5. 소결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92.5%가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농사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부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 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일 참여 정도가 높았다.

농가(132가구) 중에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45.5%였다. 트랙터, 콤팩트 등과 같은 대형 농기계는 자녀동거가구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에서 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선별기, 동력분무기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율은 농가의 30.3%(40호)이며, 연평균 고용인원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위탁 작업을 하는 농가의 비율은 68.2%(90호)였는데, 특히 벼농사의 경우에 보편화되어 있다. 품앗이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작목반이나 젊은 층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113명)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영농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6%(38명)로 나타났다. 영농교육이나 훈련은 주로 벼(25명), 고추(6명), 잡곡(3명), 딸기(2명), 인삼(2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영농에 있어서 노인들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벼농사에서는 물 관리, 육묘, 보식, 논두렁 관리, 시비, 병충해 방제, 제초, 수확 보조, 짚 관리, 농기계 작업 보조 등이고, 과수농사에서는 수분, 적과(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전정 보조, 수확, 선별, 병해충 방제, 조수 퇴치, 봉지 씌우기, 포장, 수분 등으로 나타났다. 채소농사에서는 파종, 이식, 시비, 제초, 물 관리, 수확, 선별, 포장 등에서, 축산에서는 사료 급여, 분뇨 치우기, 가축 위생 등에서 노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농사일 부담(현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상) 정도는 응답자의 86.7%가 농사일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었다.

농사일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52.2%,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21.2%, ‘일손이 모자라서’ 6.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5.3%,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 5.3% 등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리 방법으로는 ‘자식에게 맡기거나 상속해 줌’ 52.2%,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게 함’ 26.6%,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9.7% 등으로 나타났다.

영농지속 의사는 대다수 응답자들(78.8%)이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대답했다. 대도시 근교 및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영농지속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실질적 영농은퇴 연령은 7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규모 계획은 대다수 응답자들(80.5%)이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1.5%(83명)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농사일은 벼농사라고 대답을 하였다.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으며, 농외 경제활동 분야는 막노동, 경비, 상업(가게 운영) 등이었다.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6.1%, ‘나이가 너무 많아서’ 21.3%,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20.2% 등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하고 싶은 경제활동으로는 경비(13명), 농한기 부업(8명), 앉아서 할 수 있는 일(7명), 쉬운 일(5명), 무엇이랴도(5명), 막노동(3명), 공공근로사업(2명)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로는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15명), 경비(6명), 농한기 부업(6명), 공장일(5명), 농산물 가공(3명), 막노동(2명), 공공근로사업(2명), 마을공동부업(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0%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5.5%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상황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4.0%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21.0%만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중간지역에서,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농가일수록 노후 생활을 준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35.5%,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36.5%,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6.5%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 제 5 장

### 농촌 노인의 소득 실태

#### 1. 소득원

<표 5-1>에는 농촌 노인들의 소득원이 제시되어 있다. 근로소득(농업소득+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4.5%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65.5%,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1.5%로 나타났다. 자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 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9.0%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주식·증권의 이익 배당금 등), 부동산소득(토지를 도지 준 것 등), 기타 소득(퇴직금, 보험금 등)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3.5%, 17.7%, 2.5%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공적 연금+공공 부조)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00.0%이다(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받기 때문임). 공적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을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29.5%,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교통수당, 기타 정부 보조금 등)를 받는 응답자 비율은

100.0%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자녀,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7.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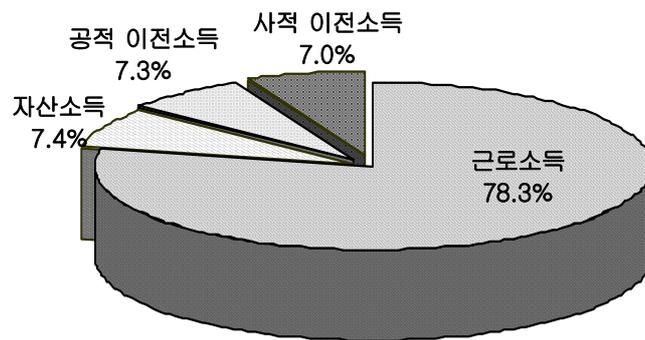
<그림 5-1>에는 농촌 노인의 소득원 구성(가구 평균 총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즉, 가구 평균 총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농업소득 또는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은 농촌 노인들의 가장 절대적인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은 농촌 노인의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약함(7.3%)을 알 수 있다.

표 5-1. 농촌 노인의 소득원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근로소득	149	74.5
농업소득	131	65.5
농업 이외 근로소득	43	21.5
자산소득	58	29.0
금융소득	27	13.5
부동산소득	35	17.5
기타 소득	5	2.5
공적 이전소득	200	100.0
공적연금	59	29.5
공공부조	200	100.0
사적 이전소득	114	57.0
계	200	100.0

주: 복수응답 결과임.

그림 5-1. 소득원 구성



<표 5-2>에는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가구유형(노인 단독,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연령 계층(65~74세, 75세 이상), 성별(남성, 여성), 지역(대도시 근교, 일반 농촌), 만성 질환(있음, 없음), 농사 참여(참여, 비 참여)를 적용하였다.

먼저, 가구유형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자녀 동거 가구(92.2%), 노인 부부 가구(64.8%), 노인 단독 가구(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노인 단독 가구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 부부 가구를 알 수 있다.

표 5-2. 사회경제적 특성별 소득원 구성 비율

단위: 만원, %

구 분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구 총소득
가족 유형	노인 단독	128 (35.2)	23 (6.3)	116 (31.9)	97 (26.6)	364 (100.0)
	노인 부부	486 (64.8)	100 (13.3)	78 (10.4)	86 (11.5)	750 (100.0)
	자녀 동거	2,239 (92.2)	130 (5.4)	34 (1.4)	26 (1.0)	2,429 (100.0)
연령 계층	65~74세	727 (71.4)	102 (10.0)	96 (9.4)	93 (9.2)	1,018 (100.0)
	75세 이상	1,192 (85.3)	66 (4.7)	67 (4.8)	72 (5.2)	1,397 (100.0)
성별	남성	823 (71.8)	111 (9.7)	103 (9.0)	110 (9.5)	1,147 (100.0)
	여성	987 (82.8)	70 (5.9)	74 (6.2)	61 (5.1)	1,192 (100.0)
지역	대도시 근교	1,065 (81.2)	89 (6.8)	96 (7.3)	61 (5.1)	1,311 (100.0)
	평야	650 (70.9)	58 (6.3)	95 (10.4)	114 (12.4)	917 (100.0)
	중간	1,260 (80.8)	178 (11.4)	48 (3.1)	73 (4.7)	1,559 (100.0)
	산간	532 (70.7)	28 (3.7)	90 (12.0)	103 (13.6)	753 (100.0)
만성 질환	있음	825 (76.7)	100 (9.3)	85 (7.9)	65 (6.1)	1,075 (100.0)
	없음	1,086 (80.3)	65 (4.8)	89 (6.6)	113 (8.3)	1,353 (100.0)
농가 여부	농가	1,151 (84.8)	91 (6.7)	71 (5.2)	45 (3.3)	1,358 (100.0)
	비농가	466 (57.1)	81 (9.9)	116 (14.2)	153 (18.8)	816 (100.0)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65~74세' 계층의 총 가구소득(평균)은 1,018만원인데 반해서, '75세 이상' 계층의 가구 총 소득(평균)은 1,397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75세 이상' 계층(85.3%)이 '65~74세' 계층(7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75세 이상' 계층은 '65~74세' 집단보다 자녀 동거 가구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남성 1,147만원, 여성 1,192만원이며,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여성(82.8%)이 남성(7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은 대도시 근교지역(1,311만원)과 중간지역(1,559만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대도시 근교지역(81.2%)과 중간지역(80.8%)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 유·무별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1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1,075만원)이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1,353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도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여·부별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농가(1,358만원)가 비농가(816만원)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비중은 농가(84.8%)가 비농가(57.1%)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전소득의 비중은 비농가(33.0%)가 농가(8.5%)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구 총소득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계이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근로소득의 합계이다.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은 2003년도의 영농 실태를 경종농업, 과수, 축산, 화훼 등으로 나누어 생산량, 생산액, 농업경영비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소득액을 구했다. 농업 이외 근로소득은 비농업 분야에서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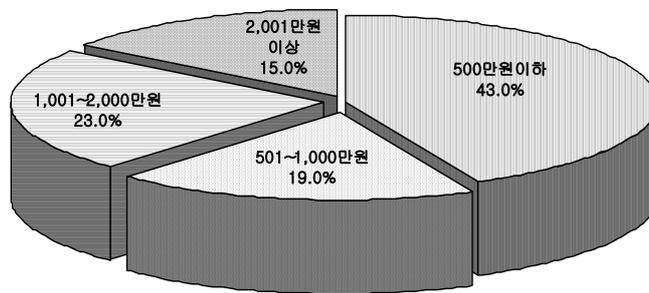
자산소득은 시장(market)을 통한 소득으로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개인연금, 퇴직금 등을 합한 것이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state)를 통한 소득으로서 공적 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호수당, 기타 정부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가족(family)이나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말한다.

<그림 5-2>에는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2003년도 가구 총소득이 1,000만

그림5-2 가구 총소득(2003년도)



원 이하인 경우가 62.0%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가구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707만원(589,219원×12개월)보다 가구 총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표 5-3>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소득(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구일수록(특히, 노인 단독가구),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비농가일수록 저소득층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구 총소득

단위: 명, %

구 분		가구 총소득				계	통계
		500만원 이하	501~ 1,000만원	1,001~ 2,000만원	2,001 만원 이상		
가족 유형	노인 단독	33 (80.5)	6 (14.6)	2 ( 4.9)	0 ( 0.0)	41 (100.0)	$\chi^2 = 91.69$ df = 6 P < .001
	노인 부부	42 (47.2)	23 (25.8)	22 (24.7)	2 ( 2.2)	89 (100.0)	
	자녀 동거	7 (12.3)	6 (10.5)	17 (29.8)	27 (47.4)	57 (100.0)	
	계	82 (43.9)	35 (18.7)	41 (21.9)	29 (15.5)	187 (100.0)	
연령 계층	65~74세	44 (37.3)	28 (23.7)	35 (29.7)	11 ( 9.3)	118 (100.0)	$\chi^2 = 17.31$ df = 3 P < .01
	75세 이상	42 (51.2)	10 (12.2)	11 (13.4)	19 (23.2)	82 (100.0)	
	계	86 (43.0)	38 (19.0)	46 (23.0)	30 (15.0)	200 (100.0)	
지역	대도시 근교	31 (35.6)	17 (19.5)	21 (24.1)	18 (20.7)	87 (100.0)	$\chi^2 = 17.33$ df = 9 P < .05
	평야	18 (40.0)	10 (22.2)	15 (33.3)	2 ( 4.4)	45 (100.0)	
	중간	17 (48.6)	6 (17.1)	4 (11.4)	8 (22.9)	35 (100.0)	
	산간	20 (60.6)	5 (15.2)	6 (18.2)	2 (6.1)	33 (100.0)	
	계	86 (43.0)	38 (19.0)	46 (23.0)	30 (15.0)	200 (100.0)	
농가 여부	농가	47 (35.6)	26 (19.7)	35 (26.5)	24 (18.2)	132 (100.0)	$\chi^2 = 9.74$ df = 3 P < .05
	비농가	39 (57.4)	12 (17.6)	11 (16.2)	6 ( 8.8)	68 (100.0)	
	계	86 (43.0)	38 (19.0)	46 (23.0)	30 (15.0)	200 (100.0)	

### 3. 근로소득

#### 3.1. 총근로소득

<표 5-4>에는 총근로소득(농업소득+농업 이외 근로소득)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총근로소득은,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25.5%, '1~250만원'이 16.0%, '251~500만원'이 17.5%, '501~1,000만원'이 14.0%, '1,001~2,000만원'이 13.5%, '2,001만원 이상'이 13.5%으로 나타났다. 즉, 총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이 59.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총근로소득은 91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4. 총근로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51	25.5
1~250만원	32	16.0
251~500만원	35	17.5
501~1,000만원	28	14.0
1,001~2,000만원	27	13.5
2,001만원 이상	27	13.5
계	200	100.0

\* 평균: 918만원

### 3.2. 농업소득

<표 5-5>에는 농업조수입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즉,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원’ 14.5%이고 평균 농업 조수입은 1,18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6>에는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즉, 응답자의 농업소득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 농업소득은 81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5. 농업조수입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500만원 이하	57	43.5
501~1,000만원	32	24.4
1001~2,000만원	23	17.6
2,001만원 이상	19	14.5
계	131	100.0

\* 평균: 1,184만원

표 5-6. 농업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500만원 이하	74	56.5
501~1,500만원	40	30.5
1,501만원 이상	17	13.0
계	131	100.0

\* 평균: 815만원

<표 5-7>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가구일수록(특히, 노인 단독가구), 대도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농업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농업소득의 비교에서는 '501~1,500만원'은 '65~74세' 연령층에서 '1,501만원' 이상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 3.3. 농업 이외 근로소득

<표 5-8>에는 농업 이외 근로소득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농업 이외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 이외 분야 근로소득은 주로 동거자녀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3.4. 가구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

<표 5-9>에는 가구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25.5%, '1~25%'가 6.5%, '26~50%'가 6.0%, '51~75%'가 14.0%, '76~90%'가 13.5%, '91% 이상'이 34.5%이고, 평균이 57.1%로 나타났다.

표 5-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

단위: 명, %

구 분		농업소득			계	통계
		500만원 이하	501~ 1,500만원	1,501만원 이상		
가족 유형	노인 단독	14 (87.5)	2 (12.5)	0 ( 0.0)	16 (100.0)	$\chi^2 = 33.25$ df = 4 P < .001
	노인 부부	44 (64.7)	22 (32.4)	2 ( 2.9)	68 (100.0)	
	자녀 동거	14 (35.9)	10 (25.6)	15 (38.5)	39 (100.0)	
	계	72 (58.5)	34 (27.6)	17 (13.8)	123 (100.0)	
연령 계층	65~74세	48 (56.5)	31 (36.5)	6 ( 7.1)	85 (100.0)	$\chi^2 = 9.33$ df = 2 P < .01
	75세 이상	26 (56.5)	9 (19.6)	11 (23.9)	46 (100.0)	
	계	74 (56.5)	40 (30.5)	17 (13.0)	131 (100.0)	
지역	대도시 근교	19 (35.8)	24 (45.3)	10 (18.9)	53 (100.0)	$\chi^2 = 20.61$ df = 6 P < .01
	평야	14 (56.0)	9 (36.0)	2 ( 8.0)	25 (100.0)	
	중간	22 (81.5)	2 ( 7.4)	3 (11.1)	27 (100.0)	
	산간	19 (73.1)	5 (19.2)	2 ( 7.7)	26 (100.0)	
	계	74 (56.5)	40 (30.5)	17 (13.0)	131 (100.0)	

표 5-8. 농업 이외 근로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500만원 이하	11	25.6
501~1,000만원	10	23.2
1001~2,000만원	8	18.6
2,001만원 이상	14	32.6
계	43	100.0

\* 평균: 1,784만원

표 5-9. 가구 총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51	25.5
1~25%	13	6.5
26~50%	12	6.0
51~75%	28	14.0
76~90%	27	13.5
91% 이상	69	34.5
계	200	100.0

\* 평균: 57.1%

## 4. 자산소득

### 4.1. 자산 총소득

<표 5-10>에는 자산 총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개인연금, 퇴직

금 등을 모두 더한 것)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 총소득이 '1~50만원'이 7.0%, '51~100만원'이 5.5%, '101~500만원'이 11.0%, '501만원 이상'이 5.5%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응답자(83.5%)의 자산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총 자산소득은 8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10. 자산 총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142	71.0
1~50만원	14	7.0
51~100만원	11	5.5
101~500만원	22	11.0
501만원 이상	11	5.5
계	200	100.0

\* 평균: 87만원

## 4.2. 금융소득

<표 5-11>에는 금융소득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86.5%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50만원'인 경우가 7.0%, '51~100만원'이 1.5%, '101만원 이상'이 5.0%이고, 평균 금융소득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5%(27명), 주식·증권의 이익 배당금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금융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173	86.5
1~50만원	14	7.0
51~100만원	3	1.5
101만원 이상	10	5.0
계	200	100.0

\* 평균: 21만원

### 4.3. 부동산소득

<표 5-12>에는 부동산소득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부동산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2.5%(165명)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1~50만원'인 경우가 3.5%, '51~100만원'이 3.5%, '101~500만원'이 7.5%, '501만원 이상'이 3.0%이고, 평균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도지(빌려) 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6.5%(33명)에 불과하고, 도지로 받는 평균 금액은 25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부동산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165	82.5
1~50만원	7	3.5
51~100만원	7	3.5
101~500만원	15	7.5
501만원 이상	6	3.0
계	200	100.0

\* 평균: 55만원

#### 4.4. 기타 자산소득

응답자들의 기타 자산소득으로는 보험금과 퇴직금이 있다. 기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금을 탄 경우가 2명(평균 100만원)이고, 퇴직금(평균 720만원)을 탄 경우가 3명이었다.

#### 4.5. 가구 총소득 대비 자산소득 비중

<표 5-13>에는 가구 총소득 대비 자산소득 비중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71.0%, '1~10%'가 11.5%, '11~50%'가 13.0%, '51% 이상'이 4.5%이고, 평균이 7.6%로 나타났다.

표 5-13. 가구 총소득 대비 자산소득의 비중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142	71.0
1~10%	23	11.5
11~50%	26	13.0
51% 이상	9	4.5
계	200	100.0

\* 평균: 7.6%

## 5. 공적 이전소득

### 5.1. 공적 이전소득(총계)

<표 5-14>에는 공적 이전소득(총계)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약 3/4 정도는 공적 이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14. 공적 이전소득(총계)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20만원 이하	113	56.5
21~50만원	11	5.5
51~100만원	24	12.0
101~200만원	30	15.0
201만원 이상	22	11.0
계	200	100.0

\* 평균: 86만원

### 5.2. 공적 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19만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지역 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0%(12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은 60~2,160만원(평균 327만원)으로 나타났다.

보훈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은 20~840만원(평균 111만원)으로 나타났다.

### 5.3. 공공 부조

<표 5-15>에는 공공 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공공 부조로 받은 금액은 '20만원 이하'가 82.5%, '21~50만원'이 5.0%, '51~100만원'이 2.0%, '101~200만원'이 2.5%, '201만원 이상'이 8.0%로 나타났다. 즉, 공공 부조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이 89.5%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공공 부조 금액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15. 공공 부조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20만원 이하	165	82.5
21~50만원	10	5.0
51~100만원	4	2.0
101~200만원	5	2.5
201만원 이상	16	8.0
계	200	100.0

\* 평균: 38만원

#### 5.4. 가구 총소득 대비 공적 이전소득 비중

<표 5-16>에는 가구 총소득 대비 공적 이전소득 비중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가구 총소득 대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1% 이하’가 22.5%, ‘1.1~5%’가 33%, ‘5.1~10%’가 9.0%, ‘10.1~50%’가 22.5%, ‘51~99.9%’가 6.5%, ‘100%’가 6.5%이고, 평균이 18.5%로 나타났다.

표 5-16. 가구 총소득 대비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1% 이하	45	22.5
1.1~5%	66	33.0
5.1~10%	18	9.0
10.1~50%	45	22.5
51~99.9%	13	6.5
100%	13	6.5
계	200	100.0

\* 평균: 18.5%

## 6. 사적 이전소득

### 6.1. 사적 이전소득

<표 5-17>에는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해당자 114명). 사적 이전소득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0%로 나타났다. 즉, 사적 이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이 68.4%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사적 이전소득은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17. 사적 이전소득의 분포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1~20만원	35	30.7
21~50만원	28	24.6
51~100만원	15	13.1
101~500만원	28	24.6
501만원 이상	8	7.0
계	114	100.0

\* 평균: 144만원

## 6.2. 가구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 비중

<표 5-18>에는 가구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 비중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사적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43.0%, ‘0.1~1%’가 7.5%, ‘1.1~5%’가 13.0%, ‘5.1~10%’가 7.5%, ‘10.1~50%’가 13.0%, ‘51~90%’가 8.0%, ‘90.1% 이상’이 8.0%이고, 평균이 16.8%로 나타났다.

표 5-18. 가구 총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0(없음)	86	43.0
0.1~1%	15	7.5
1.1~5%	26	13.0
5.1~10%	15	7.5
10.1~50%	26	13.0
51~90%	16	8.0
90.1% 이상	16	8.0
계	200	100.0

\* 평균: 16.8%

## 7.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및 이용도

### 7.1.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표 5-19>에는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노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 인지 비율은 경로우대제도(98.5%), 경로연금(57.0%),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34.5%), 노인 일자리 사업(24.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공동작업장(17.1%), 노인취업알선센터(12.0%), 노인인력지원기관(5.0%)은 인지도가 아주 낮았다.

표 5-19.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도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안다		모른다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경로연금	114	57.0	86	43.0
경로우대제도	197	98.5	3	1.5
노인공동작업장*	34	17.1	165	82.9
노인취업알선센터	24	12.0	176	88.0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69	34.5	131	65.5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0	5.0	190	95.0
노인 일자리 사업	49	24.5	151	75.5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 7.2.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

<표 5-20>에는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경로우대제도(86.0%), 경로연금(15.6%)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이용 경험이 아주 낮았다. 특히, 경로우대제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교통수당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4.0%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표 5-20.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현재 이용 중임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음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음	
	빈도	백분비 (%)	빈도	백분비 (%)	빈도	백분비 (%)
경로연금*	27	13.6	4	2.0	168	84.4
경로우대제도	165	82.5	7	3.5	28	14.0
노인공동작업장*	1	0.5	1	0.5	197	99.0
노인취업알선센터	0	0	3	1.5	197	98.5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5	2.5	2	1.0	193	96.5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0	0	1	0.5	199	99.5
노인 일자리 사업	0	0	5	2.5	195	97.5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 7.3.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표 5-21>에는 노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은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8.0%), 노인 일자리 사업(86.5%), 노인공동작업장(79.4%), 노인취업알선센터(78.5%), 노인인력지원기관(67.4%),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6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1.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꼭 필요함		필요함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경로연금*	137	68.6	58	19.1	4	2.0	0	0
경로우대제도	173	86.5	27	13.5	0	0	0	0
노인공동작업장*	72	36.2	86	43.2	38	19.1	3	1.5
노인취업알선센터	70	35.0	87	43.5	40	20.0	3	1.5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53	26.5	78	39.0	50	25.0	19	9.5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61	30.7	73	36.7	61	30.7	4	2.0
노인 일자리 사업	80	40.0	93	46.5	25	12.5	2	1.0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 7.4.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

<표 5-22>에는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가 제시되어 있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는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3.0%), 노인공동작업장(56.8%), 노인 일자리 사업(55.5%), 노인취업알선센터(53.5%),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44.5%), 노인인력지원기관(44.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있다		없다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경로연금*	185	93.0	14	7.0
경로우대제도	100	100.0	0	0
노인공동작업장*	113	56.8	86	43.2
노인취업알선센터	107	53.5	93	46.5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89	44.5	111	55.5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88	44.2	111	55.8
노인 일자리 사업	111	55.5	89	44.5

\* 무응답 1명은 제외함.

## 8. 소결

근로소득(농업소득+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4.5%, 자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 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9.0%였다.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공적 연금+공공 부조)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00.0%(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이 교통수당을 받기 때문임),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7.0%였다.

가구 평균 총 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농업소득 및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은 농촌 노인들의 가장 절대적인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707만원(589,219원 X 12개월)보다 가구 총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다.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자녀 동거 가구(92.2%), 노인 부부 가구(64.8%), 노인 단독 가구(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노인 단독 가구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 부부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65~74세' 계층의 총 가구소득(평균)은 1,018만원인데 반해서, '75세 이상' 계층의 가구 총 소득(평균)은 1,397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남성 1,147만원, 여성 1,192만원이며,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여성(82.8%)이 남성(7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은 대도시 근교지역(1,311만원)과 중간지역(1,559만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무별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1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집단(1,075만원)이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1,353만원)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여·부별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농가(1,358만원)가 비농가(816만원)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총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25.5%, '1~250만원'이 16.0%, '251~500만원'이 17.5%, '501~1,000만원'이 14.0%, '1,001~2,000만원'이 13.5%, '2,001만원 이상'이 13.5%이고, 평균 총근로소득은 918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원' 14.5%이고 평균 농업 조수입은 1,184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의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 농업소득은 815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비농업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 총소득이 '1~50만원' 7.0%, '51~100만원' 5.5%, '101~500만원' 11.0%, '501만원 이상' 5.5%이며, 평균은 87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86.5%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50만원'인 경우가 7.0%, '51~100만원' 1.5%, '101만원 이상' 5.0%이고, 평균 금융소득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2.5%(165명)로 나타났

다. 부동산소득은 '1~50만원'인 경우가 3.5%, '51~100만원'이 3.5%, '101~500만원'이 7.5%, '501만원 이상'이 3.0%이고, 평균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은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이며, 평균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19만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로 받은 금액은 '20만원 이하'가 82.5%, '21~50만원'이 5.0%, '51~100만원'이 2.0%, '101~200만원'이 2.5%, '201만원 이상'이 8.0%이고, 평균 금액이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0%이고, 평균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 비율은 경로우대제도(98.5%), 경로연금(57.0%),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34.5%), 노인 일자리 사업(24.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경로우대제도(86.0%), 경로연금(15.6%) 순이었고, 나머지는 이용 경험이 아주 낮았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은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8.0%), 노인 일자리 사업(86.5%), 노인공동작업장(79.4%), 노인취업알선센터(78.5%), 노인인력지원기관(67.4%),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65.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는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3.0%), 노인공동작업장(56.8%), 노인 일자리 사업(55.5%), 노인취업알선센터(53.5%),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44.5%), 노인인력지원기관(44.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6 장

# 농촌 노인의 소비와 저축·부채 실태

### 1. 생활비

<표 6-1>에는 ‘귀댁에서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즉, 생활비 마련 방법은 ‘전액 스스로 마련함’ 51.5%,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13.0%,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14.5%, ‘거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함’ 10.5%, ‘전액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4.5%, ‘전액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함’ 1.5%, 기타 4.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9.0%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12.0%가 생활비를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에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귀댁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0%)이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생활비 마련 방법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전액 스스로 마련함.	103	51.5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고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26	13.0
일부만 스스로 마련하고 대부분은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29	14.5
대부분을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함.	21	10.5
전액 가족으로부터 보조받음.	9	4.5
전액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마련함.	3	1.5
기타	9	4.5
계	200	100.0

표 6-2. 월 평균 생활비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20만원 이하	38	19.0
21~50만원	66	33.0
51~100만원	60	30.0
101만원 이상	36	18.0
계	200	100.0

\* 평균: 71만원

## 2. 부담되는 소비 지출

<표 6-3>에는 ‘귀택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소비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교육비 8.5%, 교통·통신비 6.0%, 광열·수도비 6.0% 등으로 나타났다.

표 6-3. 부담되는 소비 지출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보건·의료비	64	32.0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등)	39	19.5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28	14.0
경·조사비	26	13.0
교육비	17	8.5
교통·통신비	12	6.0
광열·수도비	12	6.0
기타	2	1.0
계	200	100.0

## 3. 용돈

<표 6-4>에는 ‘어르신이 한 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 이외에 개인 용돈으로 얼마 정도를 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개인 용돈 수준은 ‘5만원 이하’ 47.0%, ‘6~10만원’

28.5%, '11~20만원' 12.0%, '21만원 이상' 12.5%로 나타났다. 즉, 개인 용돈이 '10만원 이하(월)'인 응답자가 약 3/4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월 평균 개인 용돈은 11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월 평균 개인 용돈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5만원 이하	38	47.0
6~10만원	66	28.5
11~20만원	60	12.0
21만원 이상	36	12.5
계	200	100.0

\* 평균: 11만원

#### 4. 저축

<표 6-5> 및 <표 6-6>에는 '귀댁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저축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저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것), 보장성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교육보험, 재테크보험 등), 계 등에 대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월 평균 저축 총액은 '20만원 이하' 38.3%, '21~50만원' 25.0%, '51~100만원' 15.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6.7%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였다.

표 6-5. 저축 유무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저축을 함.	60	30.0
저축을 하지 못 함.	140	70.0
계	200	100.0

표 6-6. 월 평균 저축액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20만원 이하	23	38.3
21~50만원	15	25.0
51~100만원	9	15.0
101~200만원	9	15.0
201만원 이상	4	6.7
계	60	100.0

\* 평균: 80만원

## 5. 부채

<표 6-7> 및 <표 6-8>에는 ‘귀댁에는 현재 부채(빚)가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 관련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 부채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 금액은 ‘500만원 이하’ 23.2%, ‘501~1,000만원’ 15.9%, ‘1,001~2,000만원’ 17.4%, ‘2,001~5,000만원’ 29.0%, ‘5,001만원 이상’ 14.5%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응답자

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9>에는 ‘(현재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빚)를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빚을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농자금 36.8%, 의료비 10.3%, 주택자금 8.8%, 교육비 8.8%, 생활비 7.4%, 사업자금 5.9%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22.0%)의 경우는 자녀 지원으로 인한 것이 많았다.

표 6-7. 부채 유무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부채 있음.	69	34.5
부채 없음.	131	65.5
계	200	100.0

표 6-8. 부채 금액(연간)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500만원 이하	16	23.2
5001~1,000만원	11	15.9
1001~2,000만원	12	17.4
2,001~5,000만원	20	29.0
5,001만원 이상	10	14.5
계	69	100.0

\* 평균: 3,043만원

표 6-9. 부채의 주요 원인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영농자금	25	36.8
의료비	7	10.3
주택자금	6	8.8
교육비	6	8.8
생활비	5	7.4
사업자금	4	5.9
기타	15	22.0
계	68	100.0

주: 무응답 1명은 제외함.

## 6. 자녀 등에 대한 지원

<표 6-10> 및 <표 6-11>에는 ‘귀댁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외지에 사는 자녀, 친척, 친지, 사회단체 등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식량, 양념 등) 도움을 준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 금액은 ‘20만원 이하’ 17.2%, ‘21~50만원’ 31.3%, ‘51~100만원’ 23.2%, ‘101~200만원’ 20.2%, ‘201만원 이상’ 8.1%로 나타났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밀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사

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 평균 144만원임을 감안해 볼 때, 농촌 노인들은 자녀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10. 자녀 등에 대한 지원 유무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지원함.	99	49.5
지원하지 못함.	101	50.5
계	200	100.0

표 6-11. 자녀 등에 대한 지원 금액

응답범주	빈도	백분비(%)
20만원 이하	17	17.2
21~50만원	31	31.3
51~100만원	23	23.2
101~200만원	20	20.2
201만원 이상	8	8.1
계	99	100.0

\* 평균: 189만원

## 7. 소결

응답자의 79.0%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12.0%가 생활비를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0%)이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원 이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등이었다.

응답자의 3/4 정도가 개인 용돈으로 월 ‘1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채(빚)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이었다. 빚을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농자금 36.8%, 의료비 10.3%, 주택자금 8.8%, 교육비 8.8%, 생활비 7.4%, 사업자금 5.9% 등이었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였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밀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7 장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농촌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주요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농어민연금), 공공 부조,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등이 있다(표 7-1 참조).

#### 1. 공적 연금(국민연금: 농어민연금)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는 특수직역(공무원, 사립교원, 그리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제도가 있었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적용하였다가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995년 7월부터 농어촌지역에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7월 현재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2,036 천명이다. 그리고 2003년 말 현재 농어민 가입자는 43,6천 명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재직자, 특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농어민연금)은 현재의 농촌 노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어민연금 도입 당시(1995년)에 연령 제한으로 연금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많았고, 2000년 말부터 받고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월 평균 1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 농촌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일반적 불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 연금액 등으로 인해서 농어민연금의 노후대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7-1.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종류	세부 프로그램	실시연도
공적 연금	국민연금(농어민연금)	1988(1995)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활보호제도) 경로연금(노령수당)	2000(1961) 1998(1991)
경로우대제도	공영교통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할인, 교통수당 지급 등	1980
취업증진제도	노인취업알선센터(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1997(1981) 1986 2001(2004) 2004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1999

## 2. 공공 부조

###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다.

가구별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소득평가액)과 타 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급여내역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2004년도 현금급여 기준(소득이 없는 수급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1인가구는 324,186원, 2인 가구는 536,905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 등에 있어서 농촌주민들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②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는 농어업소득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되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노후주택이나 휴·폐경 농지도 그대로 일반재산으로 반영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너무 높다. ④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⑤ 농촌지역에는 자활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⑥ 공공근로사업이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 대상자에게 집중되어 농촌 노인들의 소득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 2.2. 경로연금

경로연금은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 7월부터 개칭한 것이다. 경로연금은 무 각출이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액(2004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월 4.5~5만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26,000~35,000원이다. 지원 대상자(2004년)는 65만명이며 기초생활보장노인이 34만명, 저소득노인이 31만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로연금은 수급 대상자가 크게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액도 너무 작아서 농촌 노인들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3.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도는 공영 경로우대제도와 민영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공영 경로우대제도는 철도 30~50%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 이용 시에는 전액 무료이다. 민영 경로우대제도로는 경로 승차요금(교통수당)을 65

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기본승차권 12~20매의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기 및 여객선 요금의 10~20%를 할인해 준다.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전철, 고속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공원, 항공기 등을 이용할 기회가 훨씬 작다. 따라서 농촌 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서 경로우대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덜 받고 있다.

## 4. 취업증진제도

### 4.1.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1996년까지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기존 노인능력은행을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였다.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 70개소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문제점으로는 ①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농촌 노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프로그램도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함, ② 지원수준(개소 당 연 600만원)이 너무 낮고 수요처가 부족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함, ③ 도시 근교 이외의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함 등을 들 수 있다.

## 4.2.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1986년에 시작되었으며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 생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등에서 654개소(2003년 말 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기본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기본설비) 지원은 개소 당 600만원(국비 30%, 지방비 70%)이다. 지원 대상 기본설비는 작업대, 칸막이, 옷장, 작업복, 선풍기, 난로, 장판, 생산재료비 등이다.

노인공동작업 직종으로는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봉투제작, 옷감정리(실밥 따기), 원예, 버섯재배, 마늘 까기 등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의 문제점으로는 ① 노인공동작업장은 생산업체와 연계 및 지속적인 일감의 확보가 어렵고 작업장을 통해서 얻는 소득도 매우 적어서 노인들의 소득향상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② 운영비가 부족하고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함을 들 수 있다.

## 4.3. 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의 사업 목적은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2001년도에 시범사업(5개)으로 시작하여, 2002년도에 신규로 15개소(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상담사업, 자원봉사형 사업, 종합용역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교육 및 사업 자문

등임)에서 추진하였고, 2003년도에는 총 20개소(참여인원 총 3천명 정도)에서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총 30개소로 확대되고 명칭이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의 경우, 총 30개의 노인인력지원기관 중에서 농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기본 방향으로는 ①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퇴직자도 참가하여 노후를 준비하게 함, ②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③ 지역 단위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원 사업 형태로 운영하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존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으로는 ① 노인이 주체가 되는 역할 체계 구성, ② 문제의식과 자발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지원, ③ 스스로 취업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액은 신규사업기관은 개소 당 7,500만원이고, 기존 사업기관은 개소 당 1억 5,000만원(국고, 지방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시니어클럽(노인인력지원기관)은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농촌 노인에게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4.4. 노인 일자리 사업

2004년부터 지자체,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등과 같은 사업수행기관을 주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력운영센터('04. 1.29,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설치)는 일자리 개발, 교육훈련, 사후관리, D/B관리 등 일자리사업 기획총괄·집행 기능을 한다.

노인 일자리 직접 창출에 소요되는 급여, 교육훈련비, 부대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박람회(2004년 7개 시·도) 및 노인일자리 포럼 개최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보수는 월 16~20만원이며, 지원 개월 수는 5~6개월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도시 중심의 사업임, ② 지자체에는 일자리 전담인력이 없어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③ 사업수행기관은 총 321개소(지자체 181, 노인복지회관 80, 노인인력지원기관 30, 종합사회복지관 23 등)로 다기화 되어 있으나 수행기관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④ 보수가 너무 낮음, ⑤ 지방비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공참여형에 집중됨, ⑥ 노인 적합 직종은 단순근로 직종이 주류이고 농촌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다수임, ⑦ 노인 일자리 관련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음, ⑧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함, ⑨ 노인인력 활용의 시급성·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약함 등을 들 수 있다.

##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은퇴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 분야 취업이 어렵고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은 영농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쌀 전업농에게 영농규모 확대기회를 부여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7년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처

음 도입되었다.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도는 1999년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63~72세의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업 진흥 지역의 논을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 시(소유규모 2ha까지)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도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지원 단가는 매도 시에는 연간 2,896천원/ha(2~8년간 매월 분할 지급)이고, 임대 시에는 2,977천원/ha(일시불)이다.

<표 7-2>에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량 변동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추진 실적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업비의 삭감, 낮은 지원금액, 위탁영농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해 노령농가의 은퇴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농업 진흥지역의 논에 한정됨으로 인해서 노동력 투입량이 많아 유희화가 심한 밭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조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사업비도 함께 삭감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일몰사업으로 규정되어 사업비가 더욱 삭감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04년 WTO 재협상을 앞두고 농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정책으로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낮은 보조금 단가로 인해서 고령 농업의 영농은퇴 동기부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농업 경영이양에 대한 유인효과가 저조하다.

표 7-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연도별 예산 및 사업량 변동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 (백만 원)	27,319	21,710	17,366	11,240	5,480	1,686	4,300	14,100
사업량 (ha)	10,588	8,132	6,483	4,021	1,952	600	1,500	4,650

자료: 농림부, 2004.

## 제 8 장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

### 1. 일본

일본의 농촌 노인대책의 특징으로는 ① 정부, 농협,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공동으로 추진함, ② 노인들의 기술·지식·지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③ 농촌 노인들이 수행하기 적합한 영농기회 제공을 확대함, ④ 농촌 노인 대상 사회교육을 확대함, ⑤ 농촌 노인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⑥ 농협을 중심으로 농촌 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일본 농림성의 농촌 노인과 관련한 지역농업 발전 대책으로는 ① 촌락 영농조직의 구축, ② 일손부족은 공동·집단작업으로 해결함, ③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량의 간단한 농작물 도입·보급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농촌노인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생

애현역'으로서 주체적인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 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은 체력과 영농의욕만 있다면 평생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 노인은 농업생산 및 지역사회 활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농업생산 활동에서 농촌 노인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로는 ① 기간적 농업인이 꺼려하는 경 작업 부분의 분담, ② 숙달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작업 부분의 분담, ③ 다품목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형 작물의 생산, ④ 전통적 작물의 생산, ⑤ 친 환경 농산물의 생산, ⑥ 농산물 및 특산품의 가공 등을 들 수 있다.

기간적 농업인이 꺼려하는 경 작업 부문에서의 노인의 역할로는 논 농업의 경우에는 물 관리, 논두렁 제초 등이고, 채소·화훼·과수 농업에서는 순 치기, 제초, 수확, 선별, 포장 등이며, 축산에서는 사료 주기, 착유 등이다.

노인들의 숙달된 기술이 발휘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는 적과, 전정, 간벌을 위한 선목 등이다.

다품목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형 작물의 생산 분야로는, 야채의 경우는 피망,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딸기, 토마토, 사탕수수, 죽순, 파, 청경채, 허브, 미나리 등이고, 과수는 포도, 유자 등이고, 공예작물로는 약초를 들 수 있다.

전통적 작물의 생산으로는 향미, 흑미, 적미, 메밀 등이다.

농산물 및 특산품의 가공으로는 주스, 와인, 과자, 반찬, 미소, 꽃감, 소바 등과 같은 농산가공품과 짚공예, 목공예, 죽세공 등과 같은 공예품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 활동에서 농촌 노인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로는 ① 농작물 재배 기술의 지도, ② 생활기술 지도, ③ 문화·전통의 계승, ④

농산어촌의 특질을 살리는 생애교육, ⑤ 귀농 및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정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농작물 재배 기술의 지도의 사례로는 ① 시민농원에서의 작업방법 및 농기계 및 농기구 사용법 지도, ② 학교 등에서의 작물의 특색, 요리법 등의 대한 강의, ③ 산채, 버섯 등의 식별 방식 등에 대한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생활기술 지도의 사례로는 ① 전통적 가정요리 및 향토요리에 대한 강의, ② 연구회, 학교 등에서의 공예품 제작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전통의 계승의 사례로는 ① 명절 등의 관습(예를 들면, 화전, 감주 등의 제조법)에 대한 강의, ② 전통예능, 축제 등의 지도, ③ 촌의 역사(인물사, 생활사 등)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농산어촌의 특질을 살리는 생애교육으로는 ① 도시주민 및 지역의 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재배강좌 개설, ② 농산어촌체험강좌 개설, ③ 낚시예절 강좌개설, ④ 농산어촌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귀농 및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정착 지원의 사례로는 ① 농지 및 주택 알선, ② 농업경영 지도, ③ 생활상담, ④ 농업기술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농촌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특기할 만한 영농 부문에서의 노인 지원으로는 ① 경운 등의 중노동작업의 지원, ② 생산물의 출하, 판매 지원, ③ 고령자 적합 농기계 및 농기구 개발, ④ 고령자의 체력 등을 고려한 재배법 확립, ⑤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농협에서 농촌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건강한 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고령자생활충실활동’과 ‘고령자생활원조활동’을 들 수 있다.

고령자생활충실활동으로는 ① 마음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활동, ②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 ③ 삶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 ④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높이는 활동으로는 ① 생활교실, 취미, 창작교실 등의 문화활동을 개최하고 세미나 및 이벤트의 개최에 따른 만남의 장을 만들고, ② ‘녹색문화상’의 창설 및 정보의 제공에 따른 각종 모임, 그룹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고령자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는 ① 고령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세대교류 및 회보 발행을 통해서 차세대의 활동에 지혜를 제공하고, ② 생산력의 유지·향상과 생활의 즐거움인 농업 생산을 하기 위하여 촌락농장·농원 만들기를 장려한다.

삶의 즐거움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는 농산물 자급운동을 하고, 새벽시장 및 야시장의 농산물 판매소 설치에 따라 고장의 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는 ① 건강 검진활동의 추진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② 각 지역의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교실 및 건강상담소를 개설하며, ③ 노령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령자생활원조활동으로는 ‘고령자의 생활상담활동’과 ‘건강진단 활동 및 식생활 개선운동’, ‘고령자가 안심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한다.

일본농협의 간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홈 헬프 서비스, 단기 입소생활 간호, 데이 서비스 사업, 식사 서비스, 말동무 등의 사업이 있다.

일본의 농촌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노령기초연금, 경영이양연금, 농업자노령연금, 노령복지연금, 생활보호제도, 고령자 취업대책 등을 들 수 있다.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다.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자가 원하는 시기부터 지급된다. 연금액은 연금단가, 보험료 납부 완료 개월 수, 물가 슬라이드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가산형과 기본형 연금으로 구분된다.

농업자노령연금은 65세까지 경영을 이양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경영이양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로서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본래지급’을 받고, 경영이양연금이 전액 지급정지 되어 있는 자는 ‘특례지급’을 받는다. 급여수준은 경영이양연금의 1/2 정도이다.

노령복지연금은 국민연금이 발족한 1961년에 50세를 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정 소득 이하를 조건으로 70세부터 연금(월 약 3만 엔 정도)이 지급된다.

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물급부(의료부조)와 현금급부(생활보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로 구성된다. 생활보호제도는 노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한 급부를 실시한다.

고령자 취업대책으로는 인재은행,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 농림성 사업, 민간기업체의 고령자 고용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인재은행에서는 고령자의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해 준다. 노동성에서는 기업이 인재은행을 통해 노인을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인능력개발 정보센터에서는 노인취업지도 및 소개, 구인 개척

및 계몽, 노인 적합 직업의 조사연구,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한다.

농림성에서는 노인이 비육우를 사육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임산물 또는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민간기업체에서 노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노인고용개발 조성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에게는 고용 후 1년간 월급의 1/3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4을 지급한다.

## 2. 대만

대만의 농촌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복지 관련 정부기관들의 협조 하에 농업위원회가 주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농촌 노인 관련 정책 프로그램은 가정관리 농촌지도체제를 통해서 시행한다.

농촌 노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대만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 농업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함, ② 노인 자신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 ③ 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함, ④ 지식 및 대처능력을 증진시킴, ⑤ 운동 및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함 등이다.

대만의 농촌 노인 관련 소득보장대책으로는 공무원·노동보험의 퇴직금, 생활보호, 급난 구조, 중식 서비스, 교통비용 할인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노동보험의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958년에 시작된 공무원보험은 적어도 5년 이상 정부기관에서 일해 온 노인들에게

정년퇴직과 함께 제공되는 보험이며, 공무원보험에서 적용되는 정년 연령은 65세이다.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노동보험은 1958년 전국규모의 프로그램으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활보호(생계비 지원 서비스)의 혜택은 총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양로원, 요양원에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 공공 부조 대상 노인에게는 매월 NT.4천6백50元の 생계비를 지원한다. 빈곤노인에게는 빈곤정도에 따라 NT.2천1백元에서 3천元 내외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 노인이 약 3만 명 정도이다.

급난 구조는 가장이 장기적인 질병이나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생계보호가 곤란할 때 정부 당국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긴급 생활대책 보호이다.

중식 서비스는 결식노인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노인의 심신건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 사회단체에서 맡고 있다.

교통비의 할인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은 1981년부터 버스, 기차, 선박, 항공료는 50%의 할인혜택을 받으며, 대부분의 도시 시내 버스는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농업위원회에서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행하고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과 노령 농업인을 하나의 팀으로 조직해 주는 사업이 있다. 청년 농업인과 노령 농업인을 하나의 팀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은 상호 간에 보완적인 상승효과가 있다. 이 밖에 농업위원회에서는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 실태와 장애 요인, 그들의 농정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연구사업 그리고 환경 개선교육 등을 수행한다.

농업위원회의 농촌 노인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가정관리 농촌지도 체계를 통해서 시행하며 예방을 강조함, ② 농촌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며 자신들의 상황 대처 및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줌(노인들이 가급적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 및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함), ③ 많은 농업인 및 어업인 조직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함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위원회의 노령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접근법을 살펴보면, 특히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조조직, 상부상조 조직, 외부의 노인지원 조직 등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즉, 정부 관련 정책 결정 부서 및 행정부서, 대학, 연구기관, 시민조직 등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현대적 노인복지에 접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최근 농업위원회에서는 농회를 지원하여 『실버서비스센터(銀髮族腹務中心)』를 설립하여 농촌 노인에게 휴식, 신지식 보급과 교육, 심신 수련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 3. 독일

독일은 노인의 탈 보호시설정책을 강조하여 노인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족에 의하거나 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복지법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지방분권화 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공공 및 민간 조직들이 있다.

독일의 농촌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으로는 노령연금, 사회부조, 농업경영이양연금,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 경로 우대제도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독일노인들의 소득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특히 노인

부부가족이나 독신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입이다. 독일의 노령연금은 1889년에 시작되어 몇 번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노령연금은 적용대상자에 따라 보험료 지불당사자가 받는 피보험자 연금과 피보험자 사망 시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연금의 액수는 연금의 유형(조기퇴직, 직업불능, 소득불능)에 따라, 연금을 기여한 기간에 따라, 또한 연금액으로 기여한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르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자 노령연금, 사무직 노령연금, 광부 노령연금의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종사한 직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기여금에 대한 요율배정 근거도 다르다. 그리고 남자는 63세, 여자는 60세가 지나야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회부조는 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금 없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식비, 주거비, 생활비, 광열비, 기타 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이다. 노령연금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저 연금 노인들은 대부분 사회부조에 의존한다. 사회부조에는 특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으며 노인에게는 평균 기준 액의 20~50% 정도를 가산해서 부조하는데, 이를 ‘특별수요 추가보조’라고 한다.

농업경영이양연금은 경영의 효율이 저하된 노령의 농업경영인들에게 조기의 경영이양을 촉구하여 자유화된 경영지를 젊고 발전 능력이 있는 영농후계자에게 경영하도록 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고 노령경영주는 노령보장의 권리로서 연금을 수급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는 농가경영주가 경영권 이양 후 경영후계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현금욕구를 국가가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 1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만 50세 이후에 농업경영을 이양한 65세 이상의 은퇴한 농업경영자와 미망인, 홀아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조건 없이 시작 연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에게 교통, 통신 및 문화활동 비용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독일연방철도회사는 65세 이상의 남성 노인과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할인혜택을 준다. 독일항공회사(Lufthansa)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30%를 할인하여 준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독일연방체신국으로부터 전화 설치비와 임대비, 사용료를 할인받는다.

독일의 노인복지법은 부모·자녀 간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경제생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호의무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자녀들이 고령화된 부모에 대하여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지방분권화 되어 있으며,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단체의 종류 역시 다양하여 공공단체, 민간단체, 자선단체 조직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병역의무 대신 사회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인력을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 4. 시사점

첫째, 선진국들의 경우,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농업자연금과 경영이양연금제도가 있으며, 독일은 농업경영이양연금과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제도가 있다.

둘째, 노인들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강한 농촌 노인들이 농업과 비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은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도시와 차별화된 농촌 노인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별화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때에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복지에 있어서 다목적의 접근이라든지 농협과 같은 농업인조직을 활용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도 우리가 본받을 만 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일본은 농협이 앞장을 서서 농촌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소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제 9 장

### 요약 및 결론

####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 ② 현행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 노인이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및 농업 이외 분야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 있어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기존자료 조사,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에 관한 심층 면접 설문조사, 외국 사례의 수집·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현지 실태조사는 대도시 근교지역은 안성시 공도읍, 평야지역은

논산시 채운면, 중간지역은 부여군 초촌면, 산간지역은 금산군 남이 면에서 실시하였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에 관한 현지 실태 조사는 마을조사와 가구 및 개별 농촌 노인 대상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조사는 이장, 마을유지, 읍·면사무소 담당자, 기타 마을 주민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가구 및 개별 농촌 노인 대상의 심층 면접 설문조사는 8개 부락(각 지역별로 2개 행정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설문조사의 응답자 수는 대도시 근교마을 87명, 평야마을 45명, 중간마을 35명, 산간마을 33명으로 총 200명이다.

영농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5%가 현재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92.5%가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농사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부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농사일 참여 정도가 높았다.

연간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는 비율은 농가의 30.3%(40호)이며, 연평균 고용인원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위탁 작업을 하는 농가의 비율은 68.2%(90호)였는데, 특히 벼농사의 경우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113명)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영농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6%(38명)로 나타났다. 영농교육이나 훈련은 주로 벼(25명), 고추(6명), 잡곡(3명), 딸기(2명), 인삼(2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영농에 있어서 노인들의 주요 역할을 정리해 보면, 벼농사에서는 물 관리, 육묘, 보식, 논두렁 관리, 시비, 병충해 방제, 제초, 수확 보조, 짚 관리, 농기계 작업 보조 등이고, 과수농사에서는 수분, 적과(열매숙기), 봉지 씌우기, 전정 보조, 수확, 선별, 병해충 방제, 조수

퇴치, 봉지 씌우기, 포장, 수분 등으로 나타났다. 채소농사에서는 파종, 이식, 시비, 제초, 물 관리, 수확, 선별, 포장 등에서, 축산에서는 사료 급여, 분뇨 치우기, 가축 위생 등에서 노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농사일 부담(현재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대상) 정도는 응답자의 86.7%가 농사일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농사일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52.2%, ‘농사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21.2%, ‘일손이 모자라서’ 6.2%,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기 위해서’ 5.3%, ‘취미 또는 소일거리로, 5.3% 등으로 나타났다.

농지 처리 방법으로는 ‘자식에게 맡기거나 상속해 줌’ 52.2%,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게 함’ 26.6%,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 9.7% 등으로 나타났다.

영농지속 의사는 대다수 응답자들(78.8%)이 앞으로도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대답했다. 대도시 근교 및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영농지속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실질적 영농은퇴 연령은 75세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규모 계획은 대다수 응답자들(80.5%)이 농사규모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확대·발전시키려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1.5%(83명)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에게 가장 적합한 농사일은 벼농사라고 대답을 하였다.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응답자는 7명(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46.1%, ‘나이가 너무 많아서’ 21.3%,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20.2% 등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참여 의사는 ‘하고 싶다’ 28.5%, ‘하고 싶지 않다’ 23.3%, ‘할 수 없다’ 48.2%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 이외의 하고 싶은 경제활동으로는 경비(13명), 농한기 부업(8명), 앉아서 할 수 있는 일(7명), 쉬운 일(5명), 무엇이라도(5명), 막노동(3명), 공공근로사업(2명)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로는 실내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15명), 경비(6명), 농한기 부업(6명), 공장일(5명), 농산물 가공(3명), 막노동(2명), 공공근로사업(2명), 마을공동부업(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0%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5.5%가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가정의 경제 상태가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 상황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4.0%가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21.0%만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 단독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중간지역에서,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그리고 비농가일수록 자신의 경제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 정도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농가일수록 노후 생활을 준비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 마련 책임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35.5%,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36.5%,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6.5%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만성질환이 없을수록,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가구 평균 총 소득에서 각 소득원의 평균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78.3%, 자산소득 7.4%, 공적 이전소득 7.3%, 사적 이전소득 7.0%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농업소득 및 농업 이외의 근로소득)은 농촌 노인들의 가장 절대적인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가구 총소득(2003년도)은 '500만원 이하' 43.0%, '501~1,000만원' 19.0%, '1,001~2,000만원' 23.0%, '2,001만원' 이상 15.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간 평균 총소득은 1,173만원(월 평균 9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3년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707만원(589,219원 X 12개월)보다 가구 총소득이 낮은 응답자의 비율은 54.0%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평균)은 노인 단독 가구 364만원, 노인 부부 가구 750만원, 자녀 동거 가구 2,429만원으로 나타나 노인들만 사는 가구일수록 소득 수준이 낮았다.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자녀 동거 가구(92.2%), 노인 부부 가구(64.8%), 노인 단독 가구(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노인 단독 가구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 부부 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득원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은 대도시 근교지역(1,311만원)과 중간지역(1,559만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25.5%, '1~250만원'이 16.0%, '251~500만원'이 17.5%, '501~1,000만원'이 14.0%, '1,001~2,000만원'이 13.5%, '2,001만원 이상'이 13.5%이고, 평균 총근로소득은 918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있는 응답자(131명)의 농업 조수입은 '500만원 이하' 43.5%, '501~1,000만원' 24.4%, '1,001~2,000만원' 17.6%, '2,001만

원' 14.5%이고 평균 농업 조수입은 1,184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농업조수입 - 농업경영비)의 분포는 '500만원 이하' 56.5%, '501~1,500만원' 30.5%, '1,501만원 이상' 13.0%이고, 평균 농업소득은 815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업 이외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43명)는 '500만원 이하' 25.6%, '501~1,000만원' 23.2%, '1,001~2,000만원' 18.6%, '2,001만원 이상' 32.6%이고, 비농업 분야 평균 근로소득은 1,784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 총소득이 '1~50만원' 7.0%, '51~100만원' 5.5%, '101~500만원' 11.0%, '501만원 이상' 5.5%이며, 평균은 87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6.5%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50만원'인 경우가 7.0%, '51~100만원' 1.5%, '101만원 이상' 5.0%이고, 평균 금융소득은 2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82.5%(165명)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1~50만원' 3.5%, '51~100만원' 3.5%, '101~500만원' 7.5%, '501만원 이상' 3.0%이고, 평균은 5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20만원 이하' 56.5%, '21~50만원' 5.5%, '51~100만원' 12.0%, '101~200만원' 15.0%, '201만원 이상' 11.0%이며, 평균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5%(29명)이고, 연금 수령액(연간)도 72~192만원(평균 119만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로 받은 금액은 '20만원 이하' 82.5%, '21~50만원' 5.0%, '51~100만원' 2.0%, '101~200만원' 2.5%, '201만원 이상' 8.0%이고, 평균 금액이 3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금을 받

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0%(20명)이고 연간 수령 금액은 10~360만원(평균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은 ‘20만원 이하’ 30.7%, ‘21~50만원’ 24.6%, ‘51~100만원’ 13.1%, ‘101~500만원’ 24.6%, ‘501만원 이상’ 7.0%이고, 평균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인지 비율은 경로우대제도(98.5%), 경로연금(57.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34.5%), 노인 일자리 사업(24.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경로우대제도(86.0%), 경로연금(15.6%) 순이었고, 나머지는 이용 경험이 아주 낮았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은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8.0%), 노인 일자리 사업(86.5%), 노인공동작업장(79.4%), 노인취업알선센터(78.5%), 노인인력지원기관(67.4%),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65.5%)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용 의사는 경로우대제도(100%), 경로연금(93.0%), 노인공동작업장(56.8%), 노인 일자리 사업(55.5%), 노인취업알선센터(53.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44.5%), 노인인력지원기관(44.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0%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12.0%가 생활비를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20만원 이하’ 19.0%, ‘21~50만원’ 33.0%, ‘51~100만원’ 30.0%, ‘101만원 이상’ 18.0%이고, 전체 평균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0%)이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소비지출 항목으로는 보건·의료비 32.0%, 주거비 19.5%, 식비 14.0%, 경·조사비 13.0% 등이었다.

응답자의 3/4 정도는 개인 용돈으로 월 ‘1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저축을 하는 응답자 비율은 30.0%(60명)이고,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월 평균 저축액은 8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채(빚)가 있는 응답자 비율은 34.5%(69명)이고, 부채가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부채 금액은 3,043만원이었다. 빚을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영농자금 36.8%, 의료비 10.3%, 주택자금 8.8%, 교육비 8.8%, 생활비 7.4% 등이었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준 응답자의 비율은 49.5%(99명)였다. 자녀 등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 지원 금액은 189만원(연) 정도이며, 쌀, 양념류, 배추, 밀반찬 등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주요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농어민연금), 공공 부조,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 관련 외국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① 농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② 노인들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③ 도시와 차별화된 농촌 노인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④ 노인복지에 있어서 다목적의 접근이라든지 농협과 같은 농업인 조직을 충분히 활용함 등을 들 수 있다.

## 2.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앞에서 논의된 현지 실태조사 결과 및 국내·외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농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노인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노인 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보호와 수발이 필요한 비생산적인 집단이라고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 노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78.8%)의 노령 농업인들은 자신이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즉, 경험이 풍부한 노인인력을 생산 과정에서 역지로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둘째,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기획단 등을 구성함에 있어서 적정 수의 농촌 노인문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하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심의 중인 ‘고령사회기본법(안)’에서도 농촌 노인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노인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도 농촌 노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집단 및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 노인은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지욕구도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형태(단독가구, 노인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연령계층, 지역(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성별, 영농참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농촌 노인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이 연구의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구(노인 단독 가구 및 노인 부부 가구)는 자녀 동거 가구에 비해서 소득 및 경제상태가 현저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가족유형에 따라서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만 한다.

넷째, 고령 농업인에 맞는 고령 친화적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있고 영농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 규모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에게 토지생산성이 높고 오랜 경험을 살리고 세심한 관찰과 손길이 필요한 작물 및 농법을 보급하여 자가 노동력을 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예를 들면, 물 관리, 제초, 선별, 묘목 또는 버섯재배, 약초재배, 가지치기, 접붙이기 등)을 파악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을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영농교육은 노령 농업인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 교재 및 강의내용이 대체로 노령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영농교육은 노령 농업인들의 교육 수준, 주요 작목(벼, 밭작물, 특용작물 등)을 잘 고려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기계, 농기구, 농자재의 포장 단위 등을 농촌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 노인들이 비농업 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선·개발해야 한다. 농촌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농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농업·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대책(예를 들면, 농업인복지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 록

---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에  
관한 조사표

응답자 성명: (            ) 가구주 성명: (            ) 전화: (            )

응답자 주소:            군(시)            면(읍)            리(동)            부락

면접조사원: (            )

면접 일시: 2004년            월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구 대상 설문

### 1. 가족 관계 및 가구 유형

1-1. 다음은 현재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만)	학력	직업*	혼인상태**
응답자 본인					

\* 전업농, 겸업농, 비농가(구체적인 직업을 명시)로 구분할 것.

\*\* 혼인상태: ① 유배우자 ② 사별 ③ 별거 또는 이혼 ④ 미혼 ⑤ 기타

1-2. 가족의 구성 형태는? (문항 1-1을 참조하여 면접원이 표시할 것)

- 1) 노인(만 65세 이상) 혼자 산다.
- 2) 노인부부
- 3) (편)노인부부 + 미혼자녀
- 4) (편)노인부부 + 기혼자녀
- 5) (편)노인부부 + 기혼자녀 + 손자(녀)
- 6) (편)노인부부 + 부모
- 7) 기타( )

1-3. 가구의 직업 유형은? (문항 1-1을 참조하여 면접원이 표시할 것)

- 1) 전업농가
- 2) 겸업농가
- 3) 비농가

## 2. 영농실태(전업농가 및 겸업농가만 해당)

\* 2003년 말을 기준으로 함.

2-1. 농지소유 및 경작 현황

단위: 평

구 분	소유면적	휴·폐경 면적	빌려 준 것	빌린 것	경작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임야					
기타					

## 2-2. 경종농업

작물명	식부면적(평)	생산량*	생산액(만원)**

\* 생산량은 단위를 분명히 기재할 것.

\*\*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자가 소비용은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적용.

## 2-3. 과수

구분	면적(평)	주 수	생산량*	생산액(만원)**
사과				
배				
감				
포도				
기타				

\* 생산량은 단위를 분명히 기재할 것

\*\*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자가 소비용은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적용

## 2-4. 축산, 기타

종별	두 수	평가액(만원)	연간 판매액(만원)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 2-5. 농기계 및 자동차 소유 현황

종 류		규모(두, 대)
농기계		
자동차	승용차	
	트럭	

## 2-6. 연간 고용노동력(농기계 위탁 작업 및 품앗이는 제외)

작 목	작 업 내 용	고 용 인 원		
		남	여	계
벼				
기타 경종				
과수				
축산				
총 계				

## 2-7. 농기계 위탁 작업

작 목	면 적(평)	작업내용	작업요금	작업자	비 고

## 2-8. 품앗이 이용

구 분	답작	전작	축산	과수	원예	계
남자						
여자						
계						

### 3. 가구소득 실태

3-1. 작년 한해(2003년) 동안 귀댁의 근로소득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됨.

단위: 만원

농업소득*		비농업 분야 근로소득**
조수입		
순소득		

\* 가구의 영농 실태를 참조할 것

\*\*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의 사업 또는 취업활동으로 얻는 소득

3-2. 귀댁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금융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

항 목	금액(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직접투자)	
주식·증권의 이익 배당금	
기타( )	

3-3. 귀택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부동산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부동산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됨(부동산을 임대해 주고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항 목	금액(만원)
월세 등의 임대료(보증금은 제외)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	
권리금	
기타( )	

3-4. 귀택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으로 받으신 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 목	금액(만원)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기타	

3-5. 귀택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이전소득(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자녀,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 목	금액(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금	
기타 정부보조금	
사회단체(공공) 보조금	
자녀·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	
기타( )	

3-6. 귀택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기타소득(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당첨금, 증여 등으로 인한 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 목	금액(만원)
보험금	
퇴직금	
증여·상속	
기타( )	



- 4) 문화·여가활동비
- 5)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등)
- 6) 교육비
- 7) 교통·통신비
- 8) 광열·수도비
- 9) 기타(무엇: \_\_\_\_\_ )

4-4. 어르신이 한 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 이외에 개인 용돈으로 얼마 정도를 쓰십니까?

월 개인 용돈 : 약 ( \_\_\_\_\_ ) 만원

4-5. 귀댁에서는 작년 한해(2003년)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저축을 하셨습니까?

항 목	금액(만원)
예·적금(주택청약부금 포함)	
개인연금(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연금이며, 국민연금은 제외함)	
보장성보험(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저축성보험(교육보험, 재테크보험 등)	
계	
기타( _____ )	
합 계	







6-7.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농사규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좀 더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 2)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 3) 현 상태를 축소하고 싶다.
- 4) 모두 그만두고 싶다.
- 5) 잘 모르겠다.
- 6) 기타( )

6-8. 어르신께서는 현재 농사일이 아닌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예 ( 무엇: ) → 문항 6-8a로 이동
- 2) 아니오 (문항 6-8c로 이동)

6-8a. <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2) 건강 유지를 위해서
- 3) 일하는 것이 좋아서
- 4)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 5)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 6) 기타( )

6-8b. <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월 ( )만원

## 6-8c. &lt;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gt;

현재 농사일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2)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 3)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으로)
- 4)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문항 6-8d로 이동)
- 5) 건강이 좋지 않아서
- 6) 집안일 또는 가족수발 때문에
- 7)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문항 6-8d로 이동)
- 8) 나이가 너무 많아서
- 9) 기타(무엇: )

## 6-8d. &lt;현재 농사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gt;

앞으로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1) 하고 싶다(무엇: )
- 2) 하고 싶지 않다
- 3) 할 수 없다

6-9. 어르신께서는 농촌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는 농사일 이외의 일거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10. 어르신께서 일생 동안 가졌던 직업(현재 직업 포함) 중 가장 오래 종사하셨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최장 종사 직업(                    ); 총 종사 년 수(                    )년

6-11. 현재 귀댁의 경제상태는 어떠십니까?

- 1) 매우 여유가 있다.
- 2) 여유가 있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어려운 편이다.
- 5) 매우 어렵다.

6-12. 귀댁의 경제상태는 5년 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무척 좋아졌다.
- 2) 약간 좋아졌다.
- 3) 거의 그대로이다.
- 4) 약간 나빠졌다.
- 5) 무척 나빠졌다.

6-13. 어르신께서는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 2)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
- 5)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

## 7. 노후 생활에 관한 태도

7-1.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얼마나 준비해두셨습니까?

- 1) 충분히 준비해두었다.
- 2) 어느 정도 준비해두었다.
- 3) 조금 밖에 준비를 못했다.
- 4) 전혀 준비를 못했다.

7-2. 어르신께서는 노후의 생활비는 누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 2) 자녀 및 가족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 3)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4) 기타(어떻게: \_\_\_\_\_ )

## 8. 건강 실태

8-1.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다.
- 2) 좋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약간 나쁘다.
- 5) 아주 나쁘다.



## 10. 노인복지 프로그램

10-1. 어르신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대답해주시요.

구 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필요성	이용 의사
	1) 안다 2) 모른다	1) 현재 이용 중임 2)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음 3)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음	1) 꼭 필요함 2) 필요함 3) 필요 없음 4) 전혀 필요 없음	1) 있다 2) 없다
경로연금				
경로우대제도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취업알선센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고>

1. 경로연금은 무 각출이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월 4.5~5만원) 및 저소득층 노인(월 26,000~35,000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이용료를 면제해주며, 교통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임.

3.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있음.
4. 노인취업알선센터는 과거에는 노인능력은행으로 지칭되던 것으로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5.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정부가 적정한 소득(매도 시에 월 24만 1천원)을 보장해 주어 고령 농업인(63~72세)의 은퇴를 유도하는 제도임(소유 규모 2ha 까지 한정함).
6. 노인인력지원기관은 과거에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으로 지칭되던 것으로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임.
7.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사업임.

## 참 고 문 헌

- 경제사회연구회. 2004.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2004년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④.
- 고철기. 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자순. 1991. “한국 농촌의 젊은 층 인구 전출과 노인.” 『한국노년학』 11(2): 235-250.
-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연금포럼』 15. 국민연금관리공단.
- 김경덕. 2003. 『농촌지역 인구가동: 실태·요인·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숙 등. 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익 등. 2003.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김운근, 김태곤, 허영구. 1985. 『고령화추세에 따른 농업구조 조정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응석 등. 1993. 『농촌가구의 구조적 특성과 가족부양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익기 등. 1999.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정우. 1997. “사회개발과 생산적 복지의 발전방향.” 『사회복지』 132: 84-95.
- 김정호, 김태곤, 김배성, 이병훈.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후, 한만주. 1998.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프로그램』. 집문당.
- 김진수. 1997. “외국의 생산적 복지사례.” 『사회복지』 134: 53-65.
- 노인철. “생산적 복지의 의의와 정책방향.” 『사회복지』 134: 7-18.
- 농림부. 2004. 『농림업 주요통계』.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2003 농촌생활지표』.

-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4.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농협의 대응.” 『조사연구 보고서』 93-12.
- 모선희. 2000.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시스템 모형 연구.” 『노인복지연구』 7: 193-214.
- 모선희 등. 1992.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 박대식, 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정명채, 허장. 2000. 『노령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생산적 복지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정기환, 최경환, 허장, 조홍식, 남기철. 200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허장, 강정현. 2003.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정명채, 송미령, 심재만, 조홍식, 최준렬.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순일, 황덕순, 최현수. 2001. 『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빈곤층의 소득보장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재홍.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5: 1-19.
- 변재관. 2002.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국토』 12: 6-19.
- 보건복지부. 2003. 『2002 보건복지백서』.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997.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농촌진흥청.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9. 『노인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윤순덕. 1999. “농촌노인의 부업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159-172.
- 이가옥. 1989.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 등. 1989.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 이정화, 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이철우. 1996.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 『한국사회학』 30: 779-807.
- 이혜경. 2002.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연세사회복지연구』 8: 27-58.
- 이흥규. 2001. “노령농 소득보장대책.” 『CEO Focus』 92. 농협조사부.
- 임평자, 최규련. 1995. “농촌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일감 갖기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09-119.
- 장인협, 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지연. 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배. 1999.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보건사회연구』 19(1): 3-61.
- 정경배 등. 1999.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등. 2002.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2003.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

- 보건사회연구원.
- 정명채, 민상기, 최경환. 1992. 『은퇴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등. 1994.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방안』.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완규. 1993. “농촌사회의 노령화와 농협의 대응.” 농협중앙회 조사부.
- 조완규. 1994.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최순남. 1995. 『현대노인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경수 등(편).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I)』.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 2003.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1. 『주요 선진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 한정자 등. 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 홍석표 등. 2002.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수경 등. 2004.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황의식, 문한필. 2004.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4』: 75-96.
- Japan Aging Research Center. 1998. *Aging in Japan*.
- Park, Dae-Shik. 1999. “Welfare Programs for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2(Summer): 41-55.
- Phillipson, Chris. and Alan Walker. 1986. *Ageing and Social Policy*. Brookfield, Vermont: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 Pifer, A. and L. Bronte. (ed.). 1986. *Our Aging Society*. New York: W.W. Norton.
- Rogers, Carolyn C. 2002. “The Older Population in 21st Century Rural America.” *Rural America* 17(3): 2-10.

연구보고 R481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디자인 02-2273-1775 E-mail: [cree1775@yahoo.co.kr](mailto:cree1775@yahoo.co.kr)

---

ISBN 89-89225-72-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